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호주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692,024 km ²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19 기준)
수도	캔버라(Canberra)
민족(인종)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2016년 기준)
언어	영어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3%), 기타 기독교(16.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기후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에 속하며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임.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보이고 있음.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1910년 기상관측 이래 호주의 연평균 기온은 1.44 ± 0.24도 상승했으며 이상 고온, 폭우 등 급격한 날씨변화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음.
국가원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 총독: 데이빗 헐리(David Hurley)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1-10-30 (자료원 : 호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1972-07-09	문화협정 발효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1975-06-17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발효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1979-05-02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발효	
어업협정	1983-11-24	어업협정 발효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1988-08-09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발효	
항공협정	1992-04-09	항공협정 발효	
산업기술협력약정	1993-06-22	산업기술협력약정 발효	
경제공동위설치약정	1993-12-17	경제공동위설치약정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1993-12-19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1995-07-01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발효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1997-11-14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발효	
민사사법공조 조약	2000-01-16	민사사법공조 조약 발효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2000-04-05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2005-10-18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발효	
철새보호협정	2007-07-13	철새보호협정 발효	2015년 12월 3일 개정안 발효
사회보장협정	2008-10-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0-12-09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	
자유무역협정	2014-12-12	자유무역협정 발효	

한국교민 수

167,331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2019년12월)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국-호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한·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2021년 2월 25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화상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동남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방안으로는 백신 보급 및 보건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 모색,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역내 해양안보 증진 방안 협의가 다루어졌다.

- 한국-호주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논의

2021년 5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외교, 개발장관회의에서 한국-호주 외교장관들은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믹타(MIKTA) 의장국을 수임 중인 호주와 더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의 협력,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코로나 19 대응 협력이 논의되었다.

- 한국과 호주,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

2021년 6월 11일~13일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되어 7개 정상과 자리를 함께했다. 참가한 민주주의 경제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경제회복, 국제보건, 민주주의, 기후변화, 중국 관련 지역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이 호주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5차 한국-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2021년 9월 13일 제5차 한국-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호주의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과 피터 크레이그 더튼(Peter Craig Dutton) 국방장관이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면 협의를 가진 것 자체가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와 역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를 격상해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 이에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우주 정책 대화’를 설치하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안보 측면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팬데믹 이후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호주 총리의 초대로 2021년 12월 12~15일 한국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정상은 양국 공통 관심사

인 탄소중립과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탄소 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MOU는 2019년 체결된 한국-호주 수소협력의향서(LOI)를 구체화하여 청정수소 공급망구축, 청정수소 인증 제도, 수소 발전·수송 분야 인프라 구축, 수소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호-한 경제협력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호주 핵심 광물 공급 간담회'를 통해 韓산업통상자원부와 濠산업과학에너지지원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두 국가의 광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 기업, 연구 기관, 금융기관 등 핵심 실무 그룹의 참여를 기반으로 광물 개발·생산 등 분야에 공동 투자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 제4차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2020년 12월 9일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7년 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FTA가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공감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의 가속화, FTA 활용을 통계 정기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1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인력 교류, 상품 무역, 농수산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 및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에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호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74.9%)을 상회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국-호주 수소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4월 27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한국-호주의 수소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호 수소 협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호 수소협력 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금융사 전문가가 참가해 양측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9월 양국 정부가 수소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호주 내에서는 2021년 5월 11일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이하 AKBC)와 주호주 한국대사관 주체로 서호주 퍼스에서 수소 협력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AKBC는 양국 수소협력 기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양측의 수소 분야 민간 주요 관계자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호주 측에서는 서호주 정부 및 멜버른 대학, 맥쿼리 투자사 외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주호주 한국 대사관, KOTRA,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하여 양국 수소 협력을 위한 기회 및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 한국-호주 통상장관들 간 대화 개최

2021년 7월 20일 양국 통상장관들은 서울에서 만남을 갖고 한국-호주 FTA 지속 및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7주년을 맞이한 한국-호주 FTA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나타난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해 통상규범 구축이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관련하여 한국의 광물 수입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와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국-호주 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상호 투자 확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 한국-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서 발표

2021년 10월 31일 양국 정상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에서 만남을 갖고 파리 기후협정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한국-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Low and Zero Emissions Technology Partnership)’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청정 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 공급, 저탄소 철광석과 철강, 수소연료전기차, 수소 발전,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에너지 저장 등 탄소중립 기술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과 호주 간에는 장기간 에너지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고, 이제는 저탄소 기술과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으로 전환을 해가는 단계”라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

-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로고 공개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과 주한 호주대사관이 2021년 3월 5일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를 발표했다. 양국 대사관은 2020년 10월~11월 로고 공모전을 실시하여 접수된 180여 건의 작품 중 디자인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한국에 거주하는 김인 씨의 작품을 선정했다.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인 씨의 작품은 양국을 대표하는 색깔, 랜드마크(송례문, 오페라하우스), 국기의 조합을 통해 양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1년 하반기,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 산업 교류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 주 시드니 영사관-한국문화원, 가평 전투 70주년 기념전 개최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과 시드니 한국문화원은 2021년 4월 23일~27일 ‘한국전쟁 가평 전투 70주년 기념전’을 열었다. 1951년 4월 23일부터 3일간 치러진 가평 전투는 호주 참전 역사상 가장 많은 호주 군인이 사망한 전투로, 불과 수백 명의 호주군이 수천 명의 중국 인민지원군을 막아낸 전투이다. 안작(ANZAC) 메모리얼 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개최한 이번 기념전에서 방문객들은 6.25 한국전쟁, 호주군이 참여한 가평과 마량산 전투에 관한 여러 기록물을 통해 호주군의 활약상을 관람했다. 해당 기념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보훈부장관 제프 리(Geoff Lee), 호주한국전 참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인 이안 크로포드(Ian Crawford) 해군(예)제독이 개막식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제주-태즈메니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웹세미나와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2021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호주 태즈메니아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도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교류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등 다양한 웹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해왔다. 이어서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는 태즈메니아 뮤지엄, 아트갤러리에서 ‘제주해녀’ 사진전을 개최했다. 김형선 작가의 작품 12점으로 구성된 해당 전시에서는 해녀영상, 홍보물 등도 상영 및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전시는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호주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3월8일부터 ‘제주 해녀, 바다의 여인들(Haenyeo, The sea women of Jeju Island)’ 제목으로 열렸는데 6월 13일까지였던 전시가 인기에 힘입어 10월까지 연장되었다.

- 제12회 호주한국영화제(KOFFIA) 개최

2021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Federation Square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미나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도굴, 레드슈즈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를 상영했다. 영화 정보 및 상영 스케줄은 KOFFI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영화 티켓은 1회권과 4회권으로 구분해 KOFFIA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호주에서는 총 4번의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었는데 9월 브리즈번, 10월 시드니, 12월 초 캔버라에 이어 이번 멜버른 영화제가 올해 개최된 마지막 한국영화제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호주 주요 대학 영화 학과 및 한국 문화 관련 교수들과 함께 '할리우드 영화와 대조되는 한국 영화 장르와 톤'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가 진행되기도 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2.4	2.8	1.9	-2.4	
명목GDP (십억\$)	1,385.2	1,421.3	1,391.5	1,359.3	
1인당 GDP (PPP, \$)	48,482.65	50,252.84	52,203.13	52,518.32	
1인당 명목 GDP (\$)	55,914.69	56,465.24	54,464.06	52,824.82	
정부부채 (% of GDP)	41.1	41.7	47.5	63.1	
물가상승률 (%)	1.9	1.8	1.8	0.9	
실업률 (%)	5.58	5.29	5.15	6.51	
수출액 (백만\$)	231,130.83	257,097.52	270,982.08	250,795.7	
수입액 (백만\$)	221,368.26	227,011.56	213,750.41	203,170.3	
무역수지 (백만\$)	9,762.57	30,085.96	57,231.67	47,625.4	-
외환 보유고 (백만\$)	58,285.4	49,758.68	55,730.56	32,754.77	
이자율 (%)	1.5	1.5	0.75	0.1	
환율 (자국통화)	1.28	1.42	1.46	1.29	

〈자료원 : IMF, OECD, World Bank, 호주 통계청, 호주 준비은행, 호주 재무부,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경제 동향

호주 경제는 2020년 하반기,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에 따른 내수 경제 활성화,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재가동에 따른 원자재 수출 호조로 코로나발 경기침체를 V자형으로 회복해 2020-21년 경제성장률은 1.4%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6월 우려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구 및 지역경제 1, 2위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년 대비 더 강화된 지역 봉쇄를 시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증가에 따라 현재 호주 국내 봉쇄 조치는 많은 부분 완화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타즈메니아) 및 대규모 집회 제한 등의 일부 규제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12월 19일 기준 호주 인구의 90.4%가 코로나

19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93.8%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호주 백신 보급률(2차 접종 완료)이 90%를 넘어섬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워드 코로나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공공 실내 장소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필수 착용과 같은 일부 규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분기 명목GDP는 1.9%, 2분기는 0.5%를 기록했으며 3분기는 지역 봉쇄의 영향을 받아 -2.0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 지난 분기 대비 3% 상승했으며 수송(Transport)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2%, 지난 분기 대비 10.4%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유류 가격 상승, 동시에 외부 활동 및 국내 여행이 재개되어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의류 및 신발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3.8%, 지난 분기 대비 -3.9%로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는데 이 역시 봉쇄 정책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한, 재택근무자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의 교역은 전 세계의 백신 보급 확대와 주 교역국들의 자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였다. 2021년 1분기 총 교역액은 1,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27.3%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41.6% 증가했다. 2분기 교역액은 1,50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비 42%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275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90%나 증가했다. 3분기 교역액은 1,515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256% 대폭 증가했다. 경기에 민감한 철강 등 원자재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미국, 중국 중심의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호주의 자원, 에너지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백신 접종의 확대와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2022년 호주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발생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3분기 호주 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2021년 초 회복세에 있던 호주 경기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봉쇄 규제 완화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호주 내수시장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중반에는 팬데믹 이전의 경기 회복 속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국내 봉쇄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1년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1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상했으며 OECD는 2021년 9월 전망에서 호주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한편, 2021년 11월 호주준비은행은 2022년 호주의 GDP 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예측한 4.3%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로 소비 기회 확대 및 가계 소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전 진행되었던 건설 부문의 투자 및 시공 활동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2022년 호주 금리는 현 0.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준비은행은 2020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기준 금리를 기준 0.2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했다. 호주의 국가부채상승, 가계소득 정체, 중국과의 갈등 및 코로나 재확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 물가상승률이 2~3% 범위의 기간은 시장유동성 확대를 위해 현 기준 금리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준비은행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0.3%였던 호주 물가상승률은 2021년 2분기 3.8%로 급증하였으며, 4분기인 현재는 3.25% 선에 안착해있다. 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류 가격 상승 및 자동차 수요의 증가, 신규 주택 건설 비용 상승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준비은행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 하반기보다 1% 정도 감소한 연평균 2.5%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7월 호주 실업률은 7.4%까지 상승했으나 3분기에 4.6%로 하락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실업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며, 호주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 지원 정책 및 봉쇄조치 완화로 점진적 하락세와 함께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4.5%대로 회복될 것이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2021-22년 예산안을 통해 늘어난 정부부채에도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고용 증진 및 손해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에 이어 교통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추가 152억 호주달러를 투입, 일자리 생성 및 국내 경제 유통성 확대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첨단기술 중심으로 신재생·수소 에너지, 방산, 제조, 의료바이오 산업을 지원해 호주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93,717,839,486
2	일본	45,832,749,385
3	인도	21,930,656,206
4	대한민국	20,234,762,044
5	미국	9,739,126,293
6	홍콩	9,346,713,344
7	Other Asia, nes	7,699,969,814
8	뉴질랜드	7,087,888,554
9	말레이시아	6,321,536,399
10	싱가포르	5,912,381,34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2,442,754,766
2	일본	57,892,770,378
3	대한민국	23,597,533,953
4	인도	23,358,127,880
5	미국	10,750,591,602
6	Other Asia, nes	9,634,156,587
7	싱가포르	8,529,651,698
8	홍콩	7,755,290,683
9	말레이시아	7,589,877,232

10	뉴질랜드	7,356,356,439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26,867,111,835
2	일본	57,312,235,152
3	대한민국	22,729,051,394
4	인도	18,866,967,806
5	Other Asia, nes	11,336,635,777
6	미국	11,122,021,986
7	영국	10,794,757,262
8	싱가포르	9,435,641,146
9	말레이시아	8,351,562,781
10	뉴질랜드	7,224,382,53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14,918,408,198
2	일본	43,957,953,077
3	대한민국	20,253,472,404
4	미국	13,546,056,528
5	인도	13,077,572,626
6	영국	10,394,624,904
7	싱가포르	9,457,832,897
8	Other Asia, nes	8,615,547,714
9	뉴질랜드	7,091,565,279
10	말레이시아	6,677,846,09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1,579,736,364
2	미국	24,670,319,221
3	대한민국	19,528,740,239
4	일본	16,907,024,037
5	타이	11,620,435,758
6	Areas, nes	11,332,706,193
7	독일	10,932,901,921
8	말레이시아	8,702,672,041
9	싱가포르	6,826,408,765
10	뉴질랜드	6,143,999,41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8,293,036,090
2	미국	25,155,451,368
3	일본	17,559,627,405
4	타이	11,754,555,145
5	독일	11,712,938,482
6	대한민국	10,670,600,227
7	말레이시아	10,018,157,025
8	싱가포르	9,150,840,147
9	뉴질랜드	6,096,280,754
10	영국	5,696,496,68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7,345,795,714
2	미국	26,504,703,633
3	일본	16,027,398,047

4	타이	10,810,164,282
5	독일	10,616,035,858
6	대한민국	8,969,744,758
7	말레이시아	7,874,359,112
8	싱가포르	7,800,774,021
9	뉴질랜드	5,590,167,560
10	영국	5,304,761,88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1,367,282,875
2	미국	25,354,238,408
3	일본	13,028,477,934
4	타이	10,435,826,101
5	독일	9,901,502,606
6	말레이시아	7,040,439,319
7	대한민국	6,911,815,750
8	싱가포르	6,078,227,523
9	영국	5,106,099,388
10	뉴질랜드	5,071,018,50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8,373,218,104
2	270112	유연탄	43,298,265,803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4,441,560,212
4	271111	천연가스	22,199,820,655

5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008,996,052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233,330,190
7	270119	그 밖의 석탄	9,583,622,241
8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5,190,092,852
9	100199	기타	4,542,430,499
10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932,024,23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2	유연탄	49,727,974,899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6,899,138,25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563,724,083
4	271111	천연가스	34,399,872,861
5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992,784,647
6	270119	그 밖의 석탄	10,808,414,222
7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7,031,064,796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786,921,436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514,971,796
10	020230	뼈 없는 것	3,645,284,08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66,312,093,87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7,480,173,732
3	270112	유연탄	44,245,101,510
4	271111	천연가스	37,605,881,335
5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6,411,502,878
6	270119	그 밖의 석탄	9,053,611,430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8,166,185,234

8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5,818,081,001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493,099,315
10	020230	뼈 없는 것	4,409,137,53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9,900,268,61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862,976,818
3	270112	유연탄	30,097,560,805
4	271111	천연가스	29,087,547,531
5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6,123,357,220
6	270119	그 밖의 석탄	6,162,179,496
7	020230	뼈 없는 것	3,625,295,052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280,482,987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250,560,801
10	100199	기타	2,695,550,41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118,973,648
2	271019	기타	12,018,873,20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001,725,260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506,615,447
5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200,552,024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276,320,195
7	300490	기타	4,429,988,732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66,346,048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354,041,002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130,774,92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6,007,429,31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592,476,004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827,786,787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54,142,062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603,940,926
6	300490	기타	4,383,215,62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97,157,592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78,972,864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578,945,216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29,027,83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4,703,316,64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790,278,789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7,663,970,379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25,826,537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735,504,423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712,570,609
7	300490	기타	4,425,679,388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04,742,028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45,164,757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453,694,19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9,241,958,639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6,376,226,505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616,568,000
4	300490	기타	4,807,561,178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647,120,515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427,933,183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238,732,163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15,444,100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56,688,599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492,490,100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19,862	19,160	702
2018	9,610	20,719	-11,109
2019	7,891	20,608	-12,717
2020	6,189	18,707	-12,518
2021	8,624	29,070	-20,4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840	0	839
2	7411	승용차	1,669	0	1,668
3	1331	휘발유	406	0	405
4	7441	철도차량	111	0	111
5	8352	축전지	149	1	148
6	1333	제트유및등유	173	0	173
7	7251	건설중장비	113	3	109
8	2140	합성수지	109	2	106
9	6134	아연도강판	85	0	84
10	2283	수산화나트륨	70	0	7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2,101	0	2,101
2	7411	승용차	2,075	0	2,075
3	1331	휘발유	714	0	714
4	7441	철도차량	202	0	202
5	8352	축전지	196	1	195
6	1333	제트유및등유	162	0	162
7	7251	건설중장비	145	2	143
8	2140	합성수지	140	4	136
9	6134	아연도강판	134	1	133
10	2283	수산화나트륨	103	0	10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20	철광	0	4,977	-4,977
2	1322	유연탄	0	3,621	-3,621
3	1340	천연가스	0	3,025	-3,026
4	0221	가축육류	0	1,276	-1,276
5	1310	원유	0	545	-546
6	1130	동광	0	911	-911
7	1111	금	0	192	-192
8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	764	-763
9	1190	기타금속광물	0	635	-636
10	1160	아연광	15	334	-3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20	철광	0	7,760	-7,760
2	1322	유연탄	0	6,056	-6,056

3	1340	천연가스	0	4,904	-4,904
4	0221	가축육류	0	1,484	-1,484
5	1310	원유	0	1,478	-1,478
6	1130	동광	0	1,244	-1,244
7	1111	금	0	968	-968
8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	698	-694
9	1190	기타금속광물	0	609	-609
10	1160	아연광	15	555	-54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헤어케어제품		
HS Code	330590	수입액('20/US\$백만)	17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3.06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모발 및 두피 관리 등을 직접 하는 홈뷰티 시장 확대 -K-뷰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헤어케어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 추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인과이어리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내추럴 헤어케어 제품들이 강세로 화학성분이 다량 들어간 제품보다 천연오일 및 유기농 성분 선호 -다국적 대기업에서도 전략을 변경해 유기농 및 천연성분을 함유한 헤어케어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진행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réal, Unilever, P&G, Schwarzkopf의 헤어케어제품이 50% 이상의 호주 시장 점유율 보유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미국과 태국에서의 수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독일, 스페인 순으로 유럽 국가들의 프리미엄 친환경 헤어케어 제품수입이 지속 증가 		
진출방안	<p>호주 현지 트렌드에 맞고 효과가 입증된 한국산 탈모예방제품과 건강한 모발과 두피를 유지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p> <p>유통 및 판매 구조는 소매업체가 89%, 미용실을 포함한 전문 헤어숍을 통한 유통이 7.4%,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3.5%인만큼 뷰티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현지 도소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호주 시장 진출을 모색</p>		

품목명 2	웨어러블기기		
HS Code	851712	수입액('20/US\$백만)	4,00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20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호주의 웨어러블 기기는 약 310만 대의 판매량을 보이며 전년대비 13.9% 증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락다운(도시봉쇄)을 겪으며 건강 및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헬스케어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워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스마트 밴드 등 전체 품목 지속적인 성장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제품은 아이디어를 내세워 영양관리 스마트 패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재활을 돕는 동작감지센서, 피부암 예방을 위한 자외선 감지센서, 손에 끼는 신용카드, 스마트 반지 등이 인기 - 이어웨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패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웨어러블의 판매량은 2015-2020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웨어러블 기기 시장 1위 브랜드는 Apple Watch(26.7%), Fitbit(20.2%), Garmin(10.7%), 삼성(4.6%) 순임 -품목별로는 Air Pods, Galaxy Buds와 같은 이어웨어가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함 - 최근 사용자의 심박수, 혈압, 체내 수분량 및 산소량 등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의 이상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 가능한 의료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패치가 주목 받음 		

진출방안	향후 높은 수요가 전망되는 헬스케어용 스마트 패치부터 현지에서 주목받는 핀테크가 접목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현지 고객사와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진출 모색		
품목명 3	주류(술)		
HS Code	220600	수입액('20/US\$백만)	25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3
선정사유	호주 주류 소매시장 규모는 155억 A\$(약 13조)이며 2016년부터 5년간 평균 4.5% 성장률 호주의 다음 한류는 K-팝, K-푸드 이후 K-주류로 전문가들의 예상		
시장동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루텐 프리(Gluten-free)', '과일맛' 주류 선호가 높아지면서 호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발효주 소비 증가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및 집합 규제로 사교 모임에서 애용되는 와인의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애주가들을 대상으로 증류주 소비가 상승 - 가정용 고급 수입 위스키와 진(Jin), 호주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수요도 증가		
경쟁동향	호주에서 소매 유통되는 발효주는 사이더가 대표적이며 현지 제조 사이더와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으로부터의 사과, 배 등의 과일 발효 주류가 주를 이룸 - 중국의 백주(白酒), 일본의 사케가 주도하던 호주의 아시안 주류시장에서 과일소주를 필두로 한 한국 주류의 인기 증가 아시아권 수입 발효주로는 사케가 대표적이며 한국의 막걸리가 현지 대형유통 매장에서 판매		
진출방안	현지 발효주 시장, 경쟁, 소비자 현황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필요 관련 품질 인증과 충분한 유통기한을 갖추고 한국 주류의 잠재력 높기 평가하는 대형 유통사를 공략		
품목명 4	친환경포장용기		
HS Code	482369	수입액('20/US\$백만)	9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01
선정사유	플라스틱 포장재-제품의 최종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면서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호주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호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 생분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National Packaging Target 2025' 계획 발표		
시장동향	음식 포장용기 시장 수요는 배달시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43.8%의 성장률을 보임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12.1%의 추가 성장 전망 현지 유통사들이 중국, 동남아 등에 위치한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현지 물량 공급을 늘림		
경쟁동향	호주 친환경 식품 용기 시장에는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자 최근 유럽, 싱가포르 시장에도 진출한 호주 기업 BioPak 및 100여 개의 제조유통사가 경쟁 가격 경쟁력 면에서 뛰어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진출방안	생분해 및 친환경 제품의 경우 관세 및 특별한 수입 장벽은 없음 호주 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니지만 중국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해 시장 진출 전 친환경 인증 획득 준비 미국 FDA에서 고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PFAS(독성 불소화 화합물) 미검출 테스트 내역과 코팅제를 포함한 주요 성분의 화학물 증빙 등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온라인교육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의 범주의 확대하던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교육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 - 호주 정부는 도시가 아닌 외딴 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2029년에는 A\$327억을 지출할 예정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교육산업은 부가가치 증대 기여 기준으로 2019년에 호주 전체 산업의 5%를 차지 - 오프라인 유학생 수 급감으로 피해 입은 고등교육 기관 및 업체들, 온라인 교육 수출로 회생 노력 중 - 2020년 기준 전체 에듀테크 산업의 고용규모는 약 13,000 여명 정도이며, 전체 매출은 약 \$22억 규모로 성장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에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는 초중등 교육(42%)과 고등교육(22%)에 집중 - 호주의 에듀테크 기업체 수는 2017년과 2019년 사이 350개에서 약 600여개로 증가했고 현재는 1,100여개의 온라인 수업 업체가 호주 전역과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학생들의 핵심 교육지표인 STEM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교육 육성에 초점 맞춤 - 호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훌륭한 시장으로 영어권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테스트 마케팅이 가능하며 호주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점을 활용
품목명 2	수소에너지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풍부한 천연가스·재생에너지원(풍력·태양력)과 수출 인프라, 아태지역 내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보유해 수소 생산·수출에 유리 - 호주정부는 한국의 수소 정책, 지역사회의 수소 생태계 확충, 한국 기업들의 수소 기술력, 수소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대해 높이 평가 -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으로서 수요처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 경제선진국들과 협력 희망
시장동향	<p>호주는 2030년까지 아태지역의 3대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40년까지 1,580만 톤의 수소 수요가 예상되는 일본·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나아가 북미, 유럽으로까지 수소 수출을 목표</p> <p>호주의 수소 산업 개발은 2050년까지 호주 석탄 연료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1/3로 낮춰주고 8,000개 일자리, 연간 GDP에 110억 호주 달러 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p>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제조기반 부족으로 수소 전체 밸류체인 상 전해조, 배터리, 연료전지, 수소차량 등 기기, 설비는 해외 기업에 의존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수소 협력할 전망 -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과 국가 간 수소에너지 협약을 체결한 상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운송·저장 부문의 기술협력 유망 - 그린수소 확보가 필요한 대기업은 수소·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건설과 그린 암모니아를 통한 운송, 수소 민간·공공 모빌리티 중심 협력 - 중소·중견 기업은 전해조, 연료전지, 압축기 등 설비 부문 공급·협력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 및 산학 계도 호주의 관련 주체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협의, 연구 필요
품목명 3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호주의 기존 대형 소매유통사들이 적자운영으로 인해 문을 닫고 대신 온라인 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 - 호주 물류 서비스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월까지 호주 온라인 판매율은 연간55.6% 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8%의 증가율을 기록, 온라인 쇼핑 역사상 가장 큰 성장 기록 - 호주 정부는 물류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GPS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A\$ 6,400만 투자 - 첨단 기술, 자동화, 빅데이터, 정밀 분석과 같은 디지털화는 업무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동시에 물류 서비스 직원의 역할도 변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 등록된 운송 및 물류 사업체의 수는 18만5,408개 사이며 산업 내 주요 카테고리는 크게 도로 운송, 소포 배달 서비스, 포워딩 및 통관으로 구분 - 이커머스 발달에 따라 호주 소비자들이 24시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옴니채널 물류 수요 증가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호주 진출은 현지 이커머스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장 내 편리성과 가격 경쟁 치열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산업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로 자동화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데이터분석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기업 간 R&D, 공동투자 유망 -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매 판매의 10%를 차지하는 등 호주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물류, 배송시스템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의성, 빠른 배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진출 기회
품목명 4	핀테크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반의 핀테크 혁신과 전환이 가속화 되었고 비대면 결제 솔루션이 빠르게 확산 - 핀테크 산업에서 대출(Lending) 분야에 속한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호주 주식시장에서 돌풍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에코시스템, 정부 및 산업 내 지원, MZ 세대가 열광하는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로 BNPL 시장 성장 - Amazon, eBay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통신사, 피부클리닉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젊은 층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BNPL 결제 서비스를 제공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 본사를 둔 주요 BNPL 핀테크 기업Afterpay, Zip Co, FlexiGroup, Openpay를 통한 총 결제액은 2020년 회계연도에 이미 A\$ 100억 돌파 - 호주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연간 9.2%가 감소한반면, 멜버른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된 Afterpay에 가입한 소비자수는 15% 증가 - 2021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결제 전문기업 스쿼어가 호주 핀테크 기업을 290억달러에 인수 - 글로벌 온라인 쇼핑 결제의 강자 Paypal도 'Pay in 4' 할부 결제 서비스를 2021년 6월부터 호주BNPL 시장에 진출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금융산업 내 규정, 호주 BNPL 기업의 서비스, 디지털 결제 방식, 고객 경험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정보 리서치 필요 - 발달된 핀테크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마켓으로 활용
품목명 5	원격의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 발전을 가속화 - 호주 정부는 국가디지털헬스전략을 수립하고 A\$ 200억 규모의 세계 최대 메디컬 리서치 미래 기금을 조성해 제약 기술, 임상실험, 바이오 실험실 등의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GP 클리닉 99%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 - 호주 보건부는 정부 지원 하에 전 국민이 무료로텔레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 - 5,750만 건 이상의 텔레헬스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특히 멘탈헬스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치의를 만날 때에도 되도록이면 텔레헬스서비스 이용이 권장 - 디지털 의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HotDoc의 경우, 2021년 8월 초 아이폰 앱 다운로드 순위 5위에 오름 - 2012년부터 보건부의 투자를 받아 화상 진료를제공해 온 텔레헬스 플랫폼 Healthdirect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 되던 시기에 많은 환자와 의료전문가들이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즉시 상용화에 성공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한국에 비해 아직 디지털 헬스 도입 단계에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원격진료에 필요한 AI, 텔레헬스 서비스 분야 양국 협력 가능 - 화상 진료, 환자 의료 기록, AI를 이용한 치료, 디지털 대기실,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접근 등 모든 기능이 합쳐진 올인원(all-in-one) 솔루션으로 진출 모색 가능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시장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CERTA)	뉴질랜드	1983-03-28	1983-01-01	협상 지연으로 발효 후 서명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ingapore-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싱가포르	2003-02-17	2003-07-28	
호주-미국 자유 무역협정 Australia-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미국	2004-05-18	2005-01-01	
태국-호주 자유 무역협정 Thailand-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AFTA)	태국	2004-07-05	2005-01-01	
호주-칠레 자유 무역협정 Australi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IFTA)	칠레	2008-07-30	2009-03-06	
아세안-호주-뉴 질랜드 자유무역 지역 ASEAN- 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09-02-27	2010-01-01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Malaysi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말레이시아	2012-05-22	2013-01-01	
한국-호주 자유 무역협정 Kore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한국	2014-04-08	2014-12-12	
일본-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Japan- 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	일본	2014-07-08	2015-01-15	
중국-호주 자유 무역협정 Chin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FTA)	중국	2015-06-17	2015-12-20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Comprehensiv 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PP-11)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호주-홍콩 자유 무역협정 Australia-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 HKFTA)	홍콩	2019-03-26	2020-01-17	

태평양지역경제 협력협정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솔로몬 제국, 통가, 투발루	2017-06-14	2020-12-13	
페루-호주 자유 무역협정 Peru-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AFTA)	페루	2018-02-12	2020-02-11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	인도네시아	2019-03-04	2020-07-05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2022-01-01	
호주-영국 자유 무역협정 (Australia-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영국	2021-06-15		미발효

<자료원 : 호주외무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호주-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협상 진행중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터키, 미국	협상 진행중	
서비스 무역 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로, 한	협상 진행중	
태평양 동맹 자유무역협정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협상 진행중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유럽연합	협상 진행중	
호주-걸프 협력 회의 자유무역협정 Australia-Gulf Cooperation Council (GCC) FTA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협상 진행중	

〈자료원 : 호주외무부, WTO〉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1)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Prohibited Goods)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https://www.abf.gov.au/>)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동물, 식물, 유해 물질, 화학품, 무기류 등이며 상세 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이러한 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경수비대에 별도의 수입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만 일부 품목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동식물 생산품에 대한 수입제한

동식물 생산품 중 일부 제품은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호주 농림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의 생물보호 수입 허가조건(BICO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에 따른다.

BICON은 동식물 생산품의 상세 원료 또는 성분에 따른 수입허가 필요 여부 또는 수입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아래 링크에서 검색 시 가장 최신의 수입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 링크: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주요 동식물성 생산품별 수입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사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뉴질랜드, 한국 외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 한국을 제외한 전 국가로 해충 프리 지역 또는 농장 여부가 중요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신선 계란 수입 불가, 그 외 수입허가 필요(완전 건조 상태의 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호주 농림수산자원부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레토르트, 캔에 가열 후 닭고기 중간 부위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경우만 가능)
- 돼지고기: 가공 조건 및 수입국에 따라 조건부 수입 또는 수입허가 필요,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불가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이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시행한다.

○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의 식약처인 연방의료제품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제품등록부인 ARTG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TGA 인증 취득에 유리할 수 있다.

- 호주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즉, 해외 제조사 제품의 수입처가 ARTG 등록을 대행해야 한다. ARTG 등록시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청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 I 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 I (Sterile), Class I (Measuring), Class II a, Class II b, Class III,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 TGA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상 감염 테스트 기기는 TGA 등록 후 유통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사용하는 관련 의

료용품(마스크, 보호경, 장갑, 보호복 외)들의 TGA 등록도 필수이다. 즉, TGA 인증 없이는 '의료용 목적', '바이러스 침투 불가' 등의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

- 올해 7월부터 특정 CE 인증서를 획득한 일부 고 위험 및 이식형 의료기기,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인증 및 심사 프로세스가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Class III, AIMD, Class 4 IVD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기기는 구성 요소가 동물 유래 비활성 조직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인체에 사용하기 위한 조직, 세포, 미생물 또는 재조합 기반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 기기, 부수적 방식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인간의 혈액 또는 플라즈마의 안정적 유도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Class4(Class 4 IVD) 등이다. 이로써 TGA 개정 범위에 속하는 호주 의료기기 신청자는 유럽 활성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AIMDD), 의료기기 지침(MDD) 또는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라 CE 인증 유럽 지정 기관에 의해 발행된 적합성 평가 문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CE인증을 획득한 경우, TGA에 제출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가 축소된다. 해당 개정사항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emergobyul.com/blog/2021/09/australia-tga-accept-ce-mark-conformity-assessments-some-high-risk-medical-devices-ivds>)

2) 인증 관련 기관

○ 호주 표준 규격 제정 기관: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035 822, (해외에서 걸 때) +61 2 9237 6171
- 팩스: +61 2 9237 6010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주요 인증 대행 기관 : 사이 글로벌(SAI Global) 한국지사, 호주제품안전인증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 타워 1104호(우편번호 153-023)
- 전화: 02 582 1823
- 팩스: 0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웹사이트: www.saiglobal.com

○ 의료기기 인증 기관 :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주소: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전화: (61-2) 6289 4124
- 팩스: (61-2) 6203 1605
- 이메일: info@tga.gov.au(코로나19 관련 문의 이메일: enquiries@health.gov.au, 백신 문의 이메일: covidvaccineenquiries@health.gov.au)
- 웹사이트: www.tga.gov.au

TBT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저기준 (에어컨 및 열 펌프) 결정

2017년 8월 25일, 호주 환경에너지부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WTO 및 한국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호주/뉴질랜드 표준을 다음 규정에 통합하여 에어컨 에너지 효율 평가에 계절별 에너지 효율비(SEER)를 사용한다.

- AS/NZS 3823.4.1: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1: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1: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4.2: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2: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

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2: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형(Non-ducted)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AS/NZS 3823.1.1: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1: 단상 에어컨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5151:2010, MOD)

- AS/NZS 3823.1.2: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시험방법 - 덕트형(Ducted)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3:200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3 - 수열원 열 펌프 -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4: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4: 다중 분할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6-1, Ed.01 (1998) MOD)

이 표준들 역시 다음의 시험 표준을 대체한다.

- AS/NZS 3823.3:200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3: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의 성능 계산 요구사항

-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구사항

○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Zoned Energy Rating Label)을 사용하고, 계절별 에너지효율등급을 알린다. (최대 30kW 용량의 제품)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즉: 이중 덕트 이동형 에어컨을 포함한 단상 비덕트 에어컨)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주로 단상 덕트 및 삼상(three-phase) 장치)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이 30kW 를 넘는 제품은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리시험 보고서에 근거한 SEER 열 등급은 수의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동형 에어컨 (단상)은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에 따라 검사한 시험 결과가 부착된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MEPS 요건 변경(이동형 에어컨)

- 이중 덕트 장치: 에너지효율(EER)과 성능계수(COP)에 근거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2.5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건을 참조한다.)

- 단일 덕트 장치: 이 장치에서도 EER 과 COP 에 근거하여 2.5 수준의 MEPS 를 쓴다. 특히 상업용/산업용 에어컨 용량이 65kW를 넘는 에어컨인 경우, 연간 에너지효율(AEER)과 연간 성능계수(ACOP)에 근거하여 MEPS를 2.9로 한다.

○ 기타 변경 사항

- H2 MEPS 삭제: H2 시험지점인 MEPS 수준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다중-분할 등록: 이미 등록된 다중 실외 장치들로 구성된 시스템은 복합 시스템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실외 장치 전용 공급품: MEPS 요건은 시스템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외 장치 공급품에 적용된다.

- 30kW 미만 제품의 소음 테스트 기준: EN 12102:2013 실내 냉난방용 전동 압축기가 장착된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제습기. 공기소음 측정. 음력 레벨 측정이 이용될 것이다.

- 소음 등급 시험지점: 정격용량 냉방시험인 경우 T1(35°C) 또는 난방 전용 장치인 경우 H1 (7°C)의 동작점에서 측정

- 소음 시험 요건:

· 비덕트 분할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덕트 장치(분할 장치와 통합 장치 모두): 실외 소음 레벨

· 비덕트 통합(unitary) 장치 (예: 창/벽):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완전히 (냉난방) 조절된 공간에 놓인 단일 및 이중 덕트 '이동형' 통합 장치: 실내 소음 레벨

- 다중-분할 시스템: 등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합에 근거를 둔 단일 실외 장치의 실외 소음 레벨
- SEER 저하계수 변경: AS/NZS 3823.4 의 저하계수가 기본값 0.25 로 고정된다.
- 비가동(non-operative) 전력 측정: MEPS 기준에 대한 비가동 전력(예: 대기)은 AS/NZS 3823.4 의 가중평균 소비전력(Pia)으로 바뀐다.
- H2 및 H3 시험: 공기 엔탈피 시험 또는 실험 열량계 시험은 모든 에어컨에 대한 H2/H3 (2°C/- 7°C) 시험으로 인정된다.
- 기본 SEER 값 사용: 29°C 냉각시험에서 정속(Fixed speed) 제품들은 기본값을, 변속(variable speed) 제품들은 정속 시험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30 kW 넘는 제품의 시험결과 인증: 유로벤트(Eurovent), 미국냉난방공조협회(AHRI)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 30kW 넘는 제품의 시뮬레이션 시험: 물리시험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증명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최대 냉각 시험: 더 이상 라벨이 붙은 제품의 요건이 아니다.
- 상업용 제품의 등급 분류: 상업용인지 또는 가정용인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https://www.abf.gov.au>)에 접속해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을 클릭, Current tariff 의 본문 하단 Schedule3 을 클릭한다. 이후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분류' 를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할 수 있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호주항만공사에 따르면 호주는 수출입 물동량의 약 98%를 해상 물류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항구로는 물동량 기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시드니항(Port Sydney), 북부준주의 다윈항(Port Darwin), 서호주의 헤드랜드항(Port Headland)과 댐피어항(Port Dampier)이며 그 외 50여 개의 항구가 있다. 호주의 전체 항구에서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은 일일평균 약 12억 호주달러 규모이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8-2019년 호주 무역항의 총 물동량은 약 15억 8,600만 톤(약 5,729억 호주달러)이며 주(州)별 수출입 물동량은 서호주 약 9억 7,600만 톤(약 1,481억 호주달러), 퀸즐랜드주 3억 1,100만 톤(약 1,302억 호주달러), 뉴사우스웨일스주 2억 200만 톤(약 1,247억 호주달러), 빅토리아주 4,000만 톤(약 958억 호주달러)이다. 같은 기간 수출 물동량이 높았던 주요 항구는 서호주의 헤드랜드항(Port Headland)이 약 5억 300만톤 (448억 호주달러)으로 1위, 댐피어항(Port Dampier)이 약 1억 7,100만톤(약 344억 호주달러)으로 2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뉴캐슬항(Port New Castle)이 1억 6,100만 톤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 물동량이 높았던 주요 항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시드니항(Port Sydney)이 약 2,000만 톤(약 673억 호주달러)으로 1위,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항(Port Brisbane)이 약 1,600만 톤(약 366억 호주달러)으로 2위, 빅토리아주의 멜버른항(Port Melbourne)이 1,600만 톤(약 695억 호주달러)으로 3위를 기록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Infrastructure Australia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호주에는 170여 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상위 4개 공항(시드니 공항, 멜버른 공항, 브리즈번 공항, 퍼스 공항)이 전체 항공 물동량의 약 96%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 물류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호주 전체 화물량의 약 0.1%를 차지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약 1,136억 호주달러 규모(약 119만 톤, 2019년 기준)로 호주 전체 화물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 주요 공항 물동량: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물동량 상위 4개 공항의 수출입 화물량은 2019년 시드니 공항이 약 54만 톤(약 551억 호주달러)으로 1위, 멜버른 공항이 약 33만 톤(181억 호주달러)로 2위, 브리즈번 공항이 14만 톤(약 74억 호주달러)으로 3위, 퍼스 공항이 약 11만 톤(약 284억 호주달러)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항공 화물로 수출입되는 주 품목은 기계·전자장비류, 의료·음향기기, 화학제품 등이다.

3) 유의사항

호주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19가 호주 물류 산업에 끼친 영향은 타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컨테이너선 부족 사태로 운송이 지연되고 국제 선박 운임료가 2019년 대비 300% 이상 급등했으나, 호주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0%의 호주 기업만이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모 면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 부문에서는 제조업 및 비식품(non-food) 유통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9월 기준 전년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호주 항만의 노조 파업으로 2021년 연말까지 주요 무역항에서의 운송 지연이 계속될 수 있다. 호주 항운노조(The Maritime Union of Australia)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 인력부족, 이에 따른 장시간 연장 근무, 부당한 교대 근무 일정이 지속되고 있는 바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만 운용사인 Patrick Terminals사를 상대로 약 18개월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9월 말, 호주항운노조(The Maritime Union of Australia)는 사측을 상대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월 한달간 멜버른 소재 Patrick Terminals에서 매주 월, 수, 금 12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현지 무역항의 운영 상황을 주시하며 운송 일정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참고사항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의 물류사(선사, 항공사)는 운송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2021년 9월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시드니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기준, 20FT 컨테이너는 4,100~4,300 미

달러, 40FT 컨테이너는 8,000~8,400 미달러이다. 이때 통관, 내륙 운송 비용 등은 별도이다.

한진해운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적 기준 부산항에서 멜버른 항까지는 약 23일, 시드니 항까지 약 26일, 브리즈번 항까지는 약 29일이 소요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p>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호주달러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p>2) 수입 전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호주 국세청(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국세청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Code)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 FTA 포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품목별 관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 https://ftaportal.dfat.gov.au/) ○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되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되어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 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알려지 관련 유의사항 및 정보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링크 : <https://www.foodstandards.gov.au/industry/labelling/pages/default.aspx>)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 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 미국달러, 40FT의 경우는 3,000 미국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 일 경우 1kg당 약 4 미국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3) 호주 수입/반입 동식물에 대한 통관에 첨단기술 도입

호주 농림수산자원부는 2020년 9월, 3D X-ray 기기를 도입해 통관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로부터 호주로의 해상, 항공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상품 또는 수입제한 품목들이 기존의 통관 기술망을 벗어나 몰래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영상기기는 기존의 2D 기기보다 약 2배 가량 성능이 뛰어나며 호주와 뉴질랜드 관련 부처는 시범 운영 후,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Hana Express(한국 업체)

주소	9/6-20 Braidwood St. Strathfield South NSW 2136
전화번호	+61-2)9742-5788
이메일	info@hanarods.com
홈페이지	http://hanaexp.com

o PNL Global Logistics(한국 업체)

주소	87 Egert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61-2)9700-1188
이메일	info@pnlglobal.com.au
홈페이지	http://www.pnlglobal.com.au/

○ Pantos Logistics Australia(한국 업체)

주소	Unit 7, 4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전화번호	+61-2)8305-3711
이메일	inf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Qube

주소	Level 27, 45 Clarence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2)9080-1900
이메일	logistics@qube.com.au
홈페이지	https://qube.com.au

○ Linfox

주소	55 English Street, Essendon Fields, VIC 3041
전화번호	+61-3)8340-1000
이메일	customer_enquiries@Linfox.com
홈페이지	http://www.linfox.com

<자료원 : 포워딩 및 통관업체별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판단하는 법규로 외국인인수합병법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정의, 외국인 투자신고, 별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법령 전문은 <https://www.legislation.gov.au>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외국인인수합병법)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Fees Imposition Amendment Bill 2020
- Foreign Relations Bill 2020

아울러 호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아니나 호주 상법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상장기업)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인력 채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호주 외국인투자심의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FIRB)는 연방정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신청서 심사와 승인 여부에 관여하며 외국인 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황

기존에 호주 외국인투자심의회(FIRB) 등록 대상은 외국인이 호주 내 거주용 부동산이나 농·토지에 투자할 경우 등 투자금액 및 분류에 따라 달랐다. 허나 2015년 외국 기업이 북부준주 소재 다윈(Darwin) 항구를 99년 대여하는 임대 계약이 주정부 권한으로 승인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하여 연방 정부 재무 장관 권한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9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외국인 투자제안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호주 국익(National interest) 부합 여부에 대한 FIRB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IRB에 회부되는 투자금액: US \$0 이상
- 투자 승인 심사기간: 최장 6개월
- 적용 대상: 모든 '외국인'으로 주거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투자자,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요

호주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호주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무역투자진흥원(Austrade)은 호주 내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호주 내 법인 설립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망지역과 업종 등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호주 정부는 Grants and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가 및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신생기업 및 기업 확장, 리서치 등의 특정 활동, 세금 감면, 산업보조 등으로 다양하다. 단, 기간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많으므로 각 제도의 적용 기간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https://www.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 또는 각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 혜택

호주 연방정부는 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을 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도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동 혜택은 호주 산업부 산하 AusIndustry와 국세청(ATO)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신청 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AusIndustry에 등록해야 한다.

-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The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준다. 기업의 규모, 산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 연 매출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며, 소득 공제 규제되지 않은 업체는 45%의 환부세가 지원된다. 연 매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40%의 세금면제가 지원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특허박스제이란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호주의 경우 바이오기술·의료 분야에서 취득한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기존의 법인세율(25~30%)이 아닌 17%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말한다. 2021년 5월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 외국 투자자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지원

- 주요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업종 구분 없음): 2021년 6월 기준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 하나만 진행 중이다.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은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내 등록된 법인 이거나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펀드의 규모는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자원 부문 투자 규제

○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 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6개 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6개 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하여금 필요 시 개발 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탐사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의무가 주어진다.

○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 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아래의 5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Mining Act 1978(채광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Native Title Act (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Offshore Minerals Act 1994(the OM Act, 역외 광물 자원 보호법)

2)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

기 2개 법이 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3) 광업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으므로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단, 매출액이 2백만 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은 28.5% 적용).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징수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p>1) 개요</p> <p>호주는 넓은 국토 면적 대비 인구의 수가 적고 5~6개의 대도시에 분산 집중된 특성상 대부분의 산업 공단은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산업 공단들은 호주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으며, 주로 주(State)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며, 그중 일부는 민간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개발 및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 산업 공단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p> <p>현재 호주 내에는 다수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그 가운데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and Research Park)과 일반 단지(Industrial Park)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 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크의 개념으로 일반 사무용 오피스 건물이 주를 이루며 몇몇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개발 목적상의 산업 밀집 개발 지역의 성격이 짙다.</p> <p>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Technology and Research Park이다.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구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 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접 금액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p> <p>2) 기술산업단지(Technology and Research Park)</p> <p>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p>
------------------------	--

산업단지

○ 캔버라 테크놀로지 파크(Canberra Technology Park)

규모	5.8ha
위치	49 Phillip Avenue, Watson ACT 2602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61-2-6162-5100○ 이메일: management@canberratechpark.com○ 홈페이지: https://canberratechpark.com.au

○ 테크놀로지 파크 아들레이드(Technology Park Adelaide)

규모	3.5ha
위치	Mawson Lakes Blvd, Mawson Lakes SA 5095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61-8-8260-8111○ 이메일: julie.bria@sa.gov.au○ 홈페이지: https://techpark.sa.gov.au

○ 노웨스트 비즈니스 파크(Norwest Business Park)

규모	377 ha
위치	402/5 Celebration Drive, Norwest Business Park, Bella Vista NSW 2153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61-2-8824-9821○ 이메일: www.norwestassociation.com.au/contact-u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홈페이지: http://www.norwestassociation.com.au

○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Merrifield Business Park)

규모	330ha
위치	Polaris Road, Mickleham VIC 3064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61-3-8681-2200○ 이메일: https://merrifieldmelbourne.com.au/contact/ (홈페이지 통해 가능)○ 홈페이지: http://merrifieldbusinesspark.com.au/

○ 맥쿼리 파크(Macquarie Park)

규모	85.4ha
위치	9-13 Waterloo Rd, Macquarie Park NSW 2113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미공개 ○ 이메일: info@macquariepark.com.au ○ 홈페이지: https://macquariepark.com.au/

○ 벤틀리 테크노 파크(Technology Park Bentley)

규모	미공개
위치	2 Brodie Hall Drive Bentley, Western Australia 6102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61 8 9451 0888 ○ 이메일: admin@techparkwa.com.au ○ 홈페이지: https://techparkwa.com.au/technology-park/

○ 이노베이션 캠퍼스(Innovation Campus)

규모	미공개
위치	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61 2 4221 5115 ○ 이메일: ic-admin@uow.edu.au ○ 홈페이지: https://innovationcampus.com.au/

<자료원 : 산업단지 별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퀸즐랜드(Queensland, QLD) 주

- 면적: 1,852,642km²
- 인구: 509만 명
- 주도: 브리즈번(Brisbane)
- 주요 기관: 퀸즐랜드 주정부
- 주요 산업: 관광산업, 농수산물 수출 등
- 비고: 퀸즐랜드 주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단위의 투자 유치 기구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브리즈번을 포함한 남동 지역이 투자 유치 활동에 가장 활발하며 브리즈번 시(Brisbane City Council)이 운영하는 Choose Brisbane이 기업 유치 활동을 담당한다. Choose Brisbane은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경제환경, 빠른 인구성장, 다수의 민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우호적인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등을 내세우며 투자유치에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TIQ(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는 퀸즐랜드정부의 무역투자 촉진 업무를 담당하며 전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서호주(Western Australia, WA) 주

- 면적: 2,645,615km²
- 인구: 262만 명
- 주도: 퍼스(Perth)
- 주요 기관: 서호주 주정부

- 주요 산업: 광산업,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 비교: 2009년 이후 세계적인 지하자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서호주 주의 투자 기회 및 투자 대상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3년 이후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지하자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서호주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원 및 에너지 원자재 투자 및 생산량의 급증으로 서호주는 광업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들의 목적지가 될 전망이다. 철광석 생산이 확장되며 관련 장비,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다. 원격제어 채굴과 같은 새로운 광업기술이 서호주에서 시험되고 있다.

서호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인력조달이 어려워 만성적인 기술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State Migration Centre가 2006년 설치되어 해외로부터의 기술 인력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 주

- 면적: 809,444km²

- 인구: 808만 명

- 주도: 시드니(Sydney)

- 주요 기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증권투자위원회, 증권거래소, 호주연방법원 등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실

- 비교: 해마다 다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3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으며, 호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음식, 정보통신기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포용하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와 같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 투자유치 담당 기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산하의 Invest in NSW가 맡아 활동하고 있다. NSW 주 정부는 2020년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욱 투자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서부 시드니 공항에 글로벌 비즈니스 게이트웨이이자 첨단지구인 Western Sydney Aerotropolis 건설 프로젝트이다.

○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주

- 면적: 1,420,970km²

- 인구: 24만 명

- 주도: 다윈(Darwin)

- 주요 기관: 노던 테리토리 주 정부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실

- 비교: 호주 Northern Territory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가 농업 분야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호주 북부 NT 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비교적 수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호주의 폐쇄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NT 주와 같은 인구 저밀도 지역은 농업종사 직업군(Farmer)의 이민 기회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48401.4	45225.2	68477.4	39224	20146.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2304.47	6355.96	7799.54	9265.86	9171.52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19	32	879,752	159	785,082
2020	122	28	984,686	178	658,829
2021	101	20	2,157,344	138	1,015,33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30,196	3	30,196
광업	22	0	76,747	43	225,532
제조업	28	8	82,740	41	74,363
건설업	2	0	19,661	1	5,759
도매 및 소매업	13	1	5,262	13	5,069
운수 및 창고업	3	1	5,113	5	5,924
숙박 및 음식점업	1	0	1	2	213
정보통신업	2	2	68	2	68
금융 및 보험업	17	6	424,547	13	214,972
부동산업	4	1	29,668	6	21,9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12	199,272	25	194,6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6,199	3	6,097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0	278	2	278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3,011	2	3,011
광업	39	1	346,560	51	152,385
제조업	19	4	223,339	34	217,1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7,218	2	7,218
건설업	3	2	211	4	9,472
도매 및 소매업	14	5	7,028	14	5,117
운수 및 창고업	0	0	0	3	2,409
숙박 및 음식점업	5	1	92	5	92
정보통신업	2	1	101	2	101
금융 및 보험업	3	1	306,122	2	165,401
부동산업	9	4	73,102	11	83,1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7	17,767	42	13,2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4	1	12	5	12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0	123	1	12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4,141	2	4,141
광업	19	3	894,363	33	359,470
제조업	9	0	42,516	16	30,055

건설업	1	0	134	0	0
도매 및 소매업	25	5	28,051	26	26,852
운수 및 창고업	0	0	0	2	712
숙박 및 음식점업	2	1	1,795	3	246
정보통신업	2	1	7	1	7
금융 및 보험업	15	3	495,584	15	410,914
부동산업	4	2	668,496	3	160,5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5	21,907	35	22,1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	234	1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116	1	11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GS건설호주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GS건설(주)

○ GS글로벌호주법인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판재류, 석유화학, 석탄
모기업명	GS글로벌(주)

○ KEB하나은행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8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KEB하나은행(주)

◦ LG상사호주법인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석탄 생산물 해외판매
모기업명	LG상사(주)

◦ LG전자(주)호주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LG전자(주)

◦ LS전선호주지사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LS전선(주)

◦ SK네트웍스호주자원법인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모기업명	SK네트웍스(주)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주)

○ 기아자동차호주판매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신차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농심호주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농심(주)

○ 대한전선호주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EHV 및 MV/LV 케이블, 엔지니어링 및 설치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전선(주)

○ 대한항공(주)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업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모트렉스호주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기업명	모트렉스

○ 바텍글로벌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기
모기업명	바텍글로벌(주)

○ 삼성물산건설부문호주지점

진출연도	2012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및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프로젝트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상사부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무역업 (화학, 철강, 섬유 등)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전자(주)호주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 서비스
모기업명	신한은행

○ 아시아나항공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주)
------	-----------

○ 오스템호주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 의료 기기
모기업명	오스템임플란트(주)

○ 우리은행시드니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우리은행(주)

○ 이노션월드와이드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마케팅
모기업명	이노션월드와이드(주)

○ 포스코인터네셔널

진출연도	196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석탄, 철광석, 스크랩 및 철강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및 비철금속, 곡물 수출입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네셔널(주)

○ 포스코호주

진출연도	198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철강/비철강원료 투자자산 관리, POSCO 및 계열사 철강제품 수입 및 오세아니아 시장판매
모기업명	포스코(주)

○ 한국관광공사시드니지사

진출연도	197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관광 홍보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호주법인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호주 내 유연탄 프로젝트 운영 및 투자를 통한 발전용 유연탄 생산
모기업명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산업은행시드니사무소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 한국전력공사호주현지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유연탄 (생산전)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호주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석탄
모기업명	한국중부발전

○ 한국타이어오스트레일리아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현대모비스호주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호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대리점 AS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상선호주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업
모기업명	현대상선(주)

○ 현대자동차(주)호주판매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종합상사(주)호주법인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주)

○ CJ 뉴트라콘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제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설탕 제조업
모기업명	CJ제일제당

○ 한화디펜스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제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무기제조
모기업명	한화(주)

○ 일진호주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샤시 제조 및 베어링
모기업명	일진글로벌(주)

○ 포스코건설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자원개발
취급분야	건설공사, 시설설계 및 시공
모기업명	포스코(주)

○ 팬오션멜버른사무소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운수
모기업명	팬오션(주)

○ 썬메탈코퍼레이션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자원개발
취급분야	자원개발
모기업명	고려아연

○ 대구텍호주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절삭공구
모기업명	대구텍(주)

○ 현대제철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YG-1호주법인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절삭공구
모기업명	와이지원(주)

○ 종근당바이오 호주법인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건강기능식품
취급분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모기업명	종근당바이오(주)

○ CJ Food 호주법인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식품 유통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CJ제일제당

○ NH농협은행 시드니지점

진출연도	2021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NH농협금융지주

○ 매일 오스트레일리아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유제품
취급분야	유제품 제조 및 판매
모기업명	매일유업(주)

<자료원 : KOTRA 시드니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1호주달러 이상(1주도 가능)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2021년 12월 기준,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506호주달러
- 매년(Annual Review Fee) : 273호주달러(Pty Ltd), 1,267호주달러(지점)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

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호주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발달된 금융과 서비스업 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전까지 28여년의 멈춤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불황도 2020년 3분기 V자형 성장세로 전환, 2021년 12월 기준 3.9%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의 FDI 신뢰지수는 3점 만점에 1.90점을 기록하였고 2020년과 같이 조사대상 25개국 중 7위를 유지하였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와 호중갈등으로 자급자족 경제에 집중하면서 2021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심사를 강화하였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호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별개로 엄격한 투자 심사와 제약을 두고 있다. 해외투자자 심사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투자승인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유형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추가로 위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호주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과 정책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 종류는 부동산과 비부동산 관련투자이다. 투자 종류마다 규정 금액이 있으며 규정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검토되어 개정되고 있다. 규정 금액은 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monetary-thresholds). 참고로 한국의 경우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어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규정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20년도 팬데믹 사태이후로 모든 해외 투자 한도 금액은 당분간 \$0으로 변경되었다. 즉, 금액이나 투자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모든 투자 행위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p> <p>3) 분쟁해결 한호 FTA로 인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방법이 가능하다. ISDS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한호 FTA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으면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별도로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Austrade)는 호주 국민들과 외국인에게 수출 및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담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외국인의 호주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FIRB 승인 절차에 관한 조언 제공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 2명 포함 적어도 3명의 임원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고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및 담보 부기채 발행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는 없다. 매해 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된다.

- 회계연도 회사 소득이 5,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자산이 2,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장점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 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하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단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 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Calibre Business Advisory

전화번호	+61-2-9261-217
주소	Level 15/309 Ken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calibreba.com.au
이메일	jamie.lee@calibreb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준목 회계사(Lee, Jun Mok), 김용진 회계사(Kim, Yong Jin))
--------------	--

◦ Private Advisory Group

전화번호	+61-2-8386-873
주소	1/35 West Parade Eastwood NSW 2112
홈페이지	http://www.privateca.com
이메일	eric.kang@private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강민우 회계사(Kang, Min Woo))

◦ H and H Lawyers

전화번호	+61-2-9233-141
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hhlaw.com.au
이메일	ken.hong@hhlaw.com.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홍경일(Hong, Kyung Il), 김현태 변호사(Kim, Hyun Tae))
비고	노동법 등 전문 법무법인

◦ The Hills Legal House

전화번호	+61-414-070-65
주소	U277, 398 Pit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ko-kr.facebook.com/thehillslegal.com.au/
이메일	law@seongminle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성민 변호사(Lee, Seong Min))

◦ Moore Australia

전화번호	+61-2-8377-900
주소	Level 7, 9 Castlereagh st Sydney NSW2000
홈페이지	https://www.moore-australia.com.au/
이메일	jyu@Moorestephens.co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형석 변호사(Yu, Hyung Suk))

◦ Wentworth Lawyers and Partners

전화번호	+61-1300-577-5
주소	L13, 2 Park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wwlp.com.au
이메일	johnpark@wwlp.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호 변호사(Park, Jeong Ho), 이소정 변호사(Lee, So Jeong))

◦ EY(Ernest and Young)

전화번호	+61-2-9276-981
주소	200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
이메일	simon.yoo@au.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훈 전무, 아시아총괄 회계사(Simon Yoo))
비고	4대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사

◦ Holing Redlich

전화번호	+61-428-505-26
주소	Level 65 MLC Center, 1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holdingredlich.com
이메일	dr.christineoh@gmail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크리스틴 오, 한국기업 전문 변호사(Christine Oh))
비고	시드니 10대 종합 법무법인

◦ PKF Brisbane

전화번호	+61-7-3839-973
주소	Level 6, 10 Eagle St Brisbane QLD 4000
홈페이지	https://www.pkf.com.au
이메일	ryan.kim@pkf.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상현(Kim, Sang Hyun))

비고	브리즈번 지역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
----	----------------------

○ Findex

전화번호	+61-2-9262-215
주소	Level 15,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findex.com.au/office/sydney
이메일	christine.park@fin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희숙(Park, Hee Suk))

<자료원 : 회계 및 법무법인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 연방준비 은행법

호주의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됐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1만 호주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 및 5,000호주달러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2) 환율 제도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13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율, 기준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ww.rba.gov.au)

외환 규제

1) 무역 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돼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는 30호주달러, 5,000~50,000호주달러의 경우는 50호주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3) 자금 조달

호주의 금융산업은 선진화돼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금조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투명하게 관리되는 만큼 부정대출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시중 4대 주요 은행 외에도 다수 은행 기관과 연금펀드 관리기관,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개 브로커들의 활동도 활발하므로 적법한 자금 조달은 원활하다.

호주의 시중금리는 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하는 기본금리에 은행별로 마진을 붙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호주의 통화는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변동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타 선진국 대비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추세인 저금리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 금리는 2021년 12월 기준 0.10%의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 금리는 15~29% 정도로 다양하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약 3%의 마진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41 호주달러(2021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84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929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4.4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2월 기준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부 적용된 시간당 20.33호주달러. 2020년 7월 대비 2.5% 인상 * 2021년 12월 21일자 미국달러(1USD=1.41AUD)로 환산하여 적용 ○ 대졸 사무직 초임 : 월급 5,416 호주달러 * 2021년 12월 21일자 미국달러(1USD=1.41AUD)로 환산하여 적용 ○ 고졸 생산직 초임 : 월급 4,126 호주달러 * 2021년 12월 21일자 미국달러(1USD=1.41AUD)로 환산하여 적용 				

<자료원 : Glassdoor, Indeed, Salary Expert>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하여 양측 합의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계약 형태는 풀타임(Full-time : 지속적 고용 계약. 평균적으로 약 38시간/주 근무), 파트타임(Part-time : 매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근무. 38시간 미만 근무. Full-time 고용인과 동일한 혜택(단, 시간 비례 적용)), 캐주얼(불규칙적 근무시간, 근무 보장 시간 없음. 휴가 미적용.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없을 시 자유롭게 계약 파기 가능)로 구분될 수 있다. 호주 국가고용기준(NES :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계약서에는 공정근로법에 규정된 10개 항목의 최소 고용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
- 자유 근무시간 협정 요구
- 출산 휴직 및 육아 관련 권리
- 연차 휴가
- 개인 휴가(병가 및 보호자 휴가) & 사별 휴가
- 지역사회 봉사휴가
- 장기근속휴가
- 공휴일
- 해고 공지 및 퇴사 급여
- 공정 근로 선언문 조항(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근로시간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으로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은 추가근무(Overtime)로 간주된다. 노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용주는 합당한 근거(reasonable overtime)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근무 수당은 산업별, 직종별로 상이하나, 보통 평일 근무시간 이후 첫 3시간은 시급의 1.5배, 첫 3시간 이후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말근무 시 기본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추가근무를 직

총별 추가근무 수당 상세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rwork.gov.au/pay/penalty-rates-and-allowances/overtime-pay>)

휴가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차 휴가, 병가(Sick leave, 연 10일), 1개 고용주 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2달의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1994년 3월 3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 줄 수 있게 돼 있다. 12개월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Maternity or Adoption leave)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고용인이 자녀를 출산했거나 고용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고용인이 16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NSW주 기준 18주의 유급휴가(Paid parental leave) 및 최대 24개월의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해고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해고통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게 됨
-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에 효력을 잃음

근로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시간 또는 연차 등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위법 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한다.

- 타인 건강 및 안전 또는 고용주의 사업의 평판과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도둑질, 사기, 폭력, 업무에 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소 통보 기간을 주어야 한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1주
- 근속연수 1~3년: 2주
- 근속연수 3~5년: 3주
- 근속연수 5년 초과: 4주

한편, 근로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임과 동시에 고용주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일 경우, 평균 해고 통보 기간에 추가로 일주일 을 가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금은 산업별 단체 협약, 기업 협 정이나 어떠한 등기 협정서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또는 다음 월급 예정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추가근무수당 및 공제액을 포함하여 미지불된 근무 시간 수당, 축적된 연차(연차수당, 할당된 장기 근속휴가 수당, 퇴직 수당)가 포함되어야 함
- 정리해고 수당 및 재정 지원 혜택: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 정리해고 수당은 소 기업 및 캐주얼 고용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호주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는 매년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텍스리턴 시 메디케어 레비라는 항목으로 개인의 연 수입의 2%를 정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고용보험

호주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 아닌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연방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급부제도로 호주정부가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된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2개월 미만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과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수당(NEUWSTART Allowance; NSA)이다. 첫 12개월 실적 기간에 구직수당 수령자에게는 구직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12개월 이후에는 구직수당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령자로 자동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실업자가 뉴스타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산재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근무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로 인해 병에 걸렸을 경우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의 부상이나 업무로 인한 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과 의료비용 및 재활비용을 커버한다. 호주의 경우 산재는 해당 주(지역)법을 준수하고 있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가입이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이다.

국민연금

고용주는 한 달에 450 호주달러(세금 전) 이상의 임금을 받는 18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지만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금(월급의 9.5%)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연금 보장이라 하며 모든 정규직(Full-time, Part-time)과 일부 캐주얼 근로자에 적용된다. 연금은 고용인의 지정연금 계좌에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지불되어야 한다. 호주는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령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은 적어도 100,000호주달러 많게는 500,000호주달러 이상 적립한 경우도 흔하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금에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호주의 법인세율은 2021년 7월부터 일반 기업대상 30%, 중소기업 대상 종전 26%에서 1% 감소한 25%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연 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이 기준은 2018/19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1/2022년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1% 감액하였다. 한편,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 할 때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을 제기해 온 바 있다.

개인소득세

호주는 개인소득세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주요 세수원이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19/2020년에 따라 기존 연소득 18,201~37,000호주달러던 과세구간은 2020/21 예산안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18,201~45,000호주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구간이 상향조정 되었다. 연소득 18,200호주달러까지의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이 없고 18,201~45,000(AUD)구간은 18,200(AUD)초과 금액에 대해 19%, 45,001~120,000(AUD)구간은 5,092(AUD)의 소득세와 45,000(AUD) 초과 금액에 대해 32.5%, 120,001~180,000(AUD)구간은 29,467(AUD)의 소득세와 120,000(AUD) 초과 금액에 대해 37%, 180,001(AUD) 이상에는 51,667(AUD)의 소득세와 180,000(AUD) 초과 금액에 대해 45%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동 소득세는 2020/2021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것으로, 2022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7월부터 2년 앞당겨 시행하였다. 이는 30여년 만의 경기불황을 맞이한 호주 정부가 개인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 및 소비 부양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0/2021 예산안에 따른 조정으로 연 급여 45,000 호주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최대 700호주달러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소득 45,001~90,000호주달러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최소 700호주달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80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0,000~120,00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최대 2,565 호주 달러의 세금 감면을 얻게 되고 120,000~180,000 에서는 2,565~0 호주달러까지의 세금 경감을 받게 되며 최대 구간인 연소득 180,000 호주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한 추가적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감세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2024년 7월부터 37% 세율 폐지, \$45,000부터 \$200,000 사이 소득자에게는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내용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가가치세

호주의 부가가치세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특별소비세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유류 및 주류, 담배, 럭셔리 자동차에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종량세 방식 인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육종가 권리) 등으로 나뉜다. 특허 등록요건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1) 초기 발명에 대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가 있고, 2)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3) 호주에서는 특허법원이나 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나, 거절이유가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이의신청사유가 더 폭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제도에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형식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유효심사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갱신 시 5년이 더 연장된다.

2021년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이 발표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주의 총 특허 출원건수는 29,293건이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창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1~3년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원동향의 변화는 향후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2%와 4% 감소한 반면, 상표출원은 반대로 8% 증가하였다. 전체 출원 건수 중 외국인(Non-resident)에 의해 출원된 비율이 92%(26,894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호주 내국인(Resident)에 의한 출원건수 비율은 8%(2,399건)에 불과해 외국인의 특허 확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3,701 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 특허출원이 무려 21%나 증가했다. 아울러, 생명과학(Biotechnology) 분야의 특허출원건수도 4%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과 토목공학 분야는 각각 1%, 12%씩 감소했다.

2020년 총 호주 상표 출원건수는 81,70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8%가 증가하였다. 이 중 호주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17% 증가한 51,662건을 기록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4% 감소한 30,040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국내 GDP가 2020년 2분기 7%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출원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인데, 내국인에 의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 및 신규 사업 창업이 활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 2020년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 하락한 7,165건을 기록하였고 내국인(-3%) 및 외국인(-5%) 모두 출원건수 하락을 보였다.

9. 청산 및 철수

<p>관련 법 및 절차</p>	<p>1) 청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청산: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참가한 투표를 통해 청산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정청산/강제청산: 주로 채권자나 주주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이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공식적 청산을 명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청산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 청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며 임명된 청산자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의 의견 및 상황을 파악하며 청산자의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 청산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000~8,000호주달러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청산 시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청산절차에 드는 비용 및 청산자의 급여 · 미지급 급여 및 연금 계산 ·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차 급여 계산 · 근로자 해고에 따른 비용 · 무담보 채권 - 청산자는 항목에 따라 자산을 처분 혹은 사업 운영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영업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된다. 한편, 통상 청산 기간은 7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p>2) 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인 철수 신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인의 철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회사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서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회사의 자산이 1,000호주달러 미만일 경우 · 회사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채무가 없을 경우 · 연차휴가 · 장기 근속휴가 · 기타 수당 · 퇴직금 · 급여 · 회사가 어느 소송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때 ·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른 비용 및 벌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 투자법인 철수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인 철수는 철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류의 우편 송부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https://asic.gov.au/online-services/company-officeholders/ · 우편 신청: 회사 Application for voluntary deregistration of a company (FORM6010)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PO Box 4000 / Gippsland Mail Centre VIC 3841 ○ 투자법인 철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기준 42호주달러
------------------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49세 호주 성인의 4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6%가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이 호주 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호주의 인구는 2020년 9월 기준 세계 1차 대전 이후 100년 만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해 전년 대비 0.9%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21년 3월 기준 인구 증감률은 이보다 더 감소한 0.1%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방문객 수가 100% 가까이 줄었고 오히려 해외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호주 통계청의 2021년 3월 기준 호주 방문객은 전년 2020년 3월보다도 97.5% 감소, 총 8,320명에 불과했다. 방문객들의 국적은 뉴질랜드, 미국, 영국 순으로 아시아계 방문객의 입국이 현저히 줄었으며 중국인은 2019년 3월 12만 4,370명 입국했으나 2021년 3월 단 260명이 입국해 99.1% 감소했다. 호주 통계청은 2050년 호주의 아시아계 인구가 약 2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들이 호주경제 소비의 주축 세력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호주-중국 간 관계 악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호주 1인당 국내 총생산(명목 GDP)은 2021년 기준 55,707 미국달러로 추정된다.

<자료원 : 호주 통계청, 호주 정부, World Bank, IMF>

소비 성향

2020년 호주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인 소득 유지를 위해 실행했던 연금 선인출 허용(1인당 2회에 걸쳐 최대 20,000호주 달러 인출 가능), 신규 주택 구매 및 리모델링 지원금 제공으로 호주인들의 가계 저축률은 오히려 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고 국내 주택 건설시장이 성장을 이어갔다.

2020년 위기심리로 소비보다는 저축에 집중했던 호주인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다시 소비를 이어나갔다. 특히, 코로나19는 호주의 이커머스 시장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현지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이를 것으로 전망했던 호주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19로 단 6개월 만에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Australia Post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호주 온라인 판매율은 55.6% 상승해 전년 동기 대비 2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호주 한 택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호주 소매업체 3개 중 2개사에서 이커머스 예산을 20.0~40.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호주 소매업의 거의 모든 업체가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소매업 뿐만 아니라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관련 물류, 택배 업체들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업, 소셜커머스도 각광받고 있다.

호주인들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국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작은 소비는 줄이는 대신 계획했던 큰 소비를 실행했다. 이를테면, 미루었던 인테리어 공사, 집 유지 보수, 국내여행을 위한 SUV 또는 캠핑카 구입이 그 예이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호주 내 주요 소비 트렌드는 '그린소비'다. 호주 CouriersPlease에서 발표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9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날씨에 2021년 상반기까지 가뭄, 산불, 홍수를 모두 겪은 호주인들 사이에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호주 대형 소매유통사인 울월스, 콜스 외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업활동에 친환경 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호주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식품에서 한국 주류로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누적판매량 19,055대로 3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KIA는 17,173대로 포드를 추월하고 5위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2021년 신규 모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로 SUV 차량의 인기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양사 대표 모델은 각각 i30, Cerato이며 SUV는 KIA 쏠렌토(Sorento)와 투싼(Tucson)이 인기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호주 자동차 시장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공급해 2021년 9월 기준, 수도 캔버라 내 20대가 상용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퀸즐랜드 주에도 추가 도입 및 운행될 예정이다. KIA는 호주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평가되며 2021년 11월 기준 2021년도 호주 Top10 자동차 브랜드 5위에 선정되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유통시장의 20%가량을 차지하며 시장 점유를 늘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호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LG TV는 Canstar blue 평가 1위 브랜드로 총 만족도 유일한 별 5개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LG전자는 2021년 5월 세계 최초 Rollable TV를 호주 시장에 런칭했으며 호주 공중파 뉴스에서 소개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디자인을 강조한 새로운 냉장고 라인을 호주 시장에 소개하고 주방가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화장품의 대호주 수출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수출액이 16.2% 증가했다. 2021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한국 상품 진열이 더욱 확대되었다. 현지 유통채널들의 K-뷰티 상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마스크팩 외 홈 뷰티 케어, 미용기기 등 관심 보이는 제품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발효식품이 주목받으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졌다. 그 외에도 매운맛 카테고리 라면의 선두주자로 한국 라면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홈쿠팡 트렌드로 한국 소스류의 수입도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김치, 라면, 소스 외 새로운 한국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품목은 냉동만두, 간편 레토르스 식품, 해조류가 있으며 해조류는 기존의 김 외에도 감태, 미역, 다시마가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주류는 호주 주류시장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호주 현지의 대형 주류 유통사에서 먼저 찾을 정도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 호주 주류 유통사 E사는 KOTRA 시드니무역관에 한국의 주류 소개를 부탁해와 호주 주류 시장 진출사업으로 연계한 바 있다. 무역관은 다양한 한국 주류제품들의 브로셔 전달, 양측간 화상상담을 주선하였고 이후, 샘플 수령 및 시음회를 진행했다. 2021년 12월 기준, 현지 유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즈음에는 호주 대형 주류 매장에 한국 주류 진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소량 수입 주문

호주는 전체 인구가 2,574만 명(2021년 기준) 정도로 국토 대비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시장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듯 호주의 시장은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그 시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케이마트(K-MART) 및 빅더블유(BIG W), 울월스(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사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호주 바이어사들이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쉽사리 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도 쉬워 소량이라도 적극 대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인즉슨, 이미 공급선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바이어사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며 그 때문에 샘플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여행이 어려워져 샘플 발송 또는 화상상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비대면 상담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호주 업체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주간 이동도 어려워져 화상상담이 확산되었다. 호주 수입자와의 비대면 상담 시에는 사전에 영문 브로슈어 또는 영문 웹사이트를 준비, 전달하여 호주 수입자가 상담에 임하기 전 국내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다. 미리 통역사 또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상담 주선을 요청하여 언어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호주와 한국 간 시차가 일광절약제(Daylight Savings)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차이가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호주 수입자들은 대개 30분가량의 상담 시간을 선호하며 상품에 따라 사용 모습을 시연할 경우,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호주 바이어사가 관심이 높을수록, 필요한 인증 및 시험 이행 여부, 영문 라벨링 준비 등 수출자가 거래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상품들의 호주 인증은 수입자가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자 입장에서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3) 미국 또는 호주 달러화로 FOB, CIF 기준의 견적 요구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미국통화 통화를 기준으로 FOB 조건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호주 업체들이 미국달러 통화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위험 관리 및 계산상의 편리 때문에 자국 통화인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FOB보다는 보험 및 운송료 가 포함된 가격인 CIF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거래 경험이 없는 호주 업체들의 경우는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경우가 많으므로 FOB 가격과 함께 CIF 가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 준수

호주인은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며 계약서상 사인이 필요한 페이지 또는 중요 사항에는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 호주 업체들은 계약서상 세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같은 기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하며 특히 대형 유통사의 경우 엄

격한 윤리적 소싱 규정(Ethical Sourcing Policy) 준수를 제조사에 요구한다. 이에 대비하여 BSCI나 SED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감사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주 업체들은 주문 시 회사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적하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를 맞추는 것은 호주 회사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5) 대금 결제 방식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L/C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주의 많은 기업은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L/C 개설 상의 절차상의 복잡성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직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또한 호주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호주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유연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6) 선적 일자

호주 기업에 물어보면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제일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납기이다. 한국 업체들을 보면 납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상 기일보다 많게는 한 달 먼저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선적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항상 의논을 먼저 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의 경우 수요를 감안해서 Stock 관리 및 주문을 하게 되며, 만약 1개월 정도 먼저 제품을 공급받는다면 1 컨테이너 당 많게는 1억 호주달러가 넘는 돈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7)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상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 물품 통관 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 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 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절대 서두르지 않으므로, 한국처럼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 달간은 현지 휴가 기간으로 종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사기 주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사기는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기망 행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며 무역거래 일방의 부주의, 비고의성으로 인한 대금지연, 품질하자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과는 구분된다. 사기유형은 크게 6종류가 있으며 이메일사기, 결제사기, 선적불량, 서류위조, 금품사기, 불법체류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무역사기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비대면 전자 상거래 증가로 서류위조, 선적불량 등의 사기와 함께 결제사기, 이메일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기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한 범인검거, 채권 회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대응방안으로서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및 KOTRA 현지 무역관으로부터 업체 신용 또는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조사 의뢰하여 거래 위험이 있는 업체는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교신

호주 기업, 업체들은 규모가 클수록 자사 웹사이트 상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웹사이트 내 이메일 작성 화면에 메시지를 남기면 이를 일반 리셉션 부서에서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 담당자까지 연락이 닿는 데에 수일이 걸릴 수 있어 빠른 회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업체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상 메시지를 남긴 후, 회신이 없다면 재발송 후 유선 연락을 취하여 이메일 전달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2) 약속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 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토, 일요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 사람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한산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 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의 기업 및 업체들 사이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확산되고 있다. 재택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용이 활발하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교신하려는 호주 기업 및 업체의 현지 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면담 및 협상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5분~10분짜리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이해를 돕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3) 회식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 근처 펍(Pub)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회식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오후 2~3시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맥주를 동료와 마시거나 근처 펍에서 마시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호주는 너무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질문은 잘하지 않으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등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초면에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 1) Amazon(www.amazon.com.au)
 - 개요: 아마존은 호주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아마존은 1994년 미국에 설립되었으며, 호주 지사는 2017년 개설되었다. 2020년에 호주 연 매출 10억 호주달러를 달성했으며 1,500명 가량의 고용인원이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프라임데이(Prime Day)라는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번개딜(Lightning Deal)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 2) eBay(www.ebay.com.au)
 - 개요: 이베이는 호주에서 평균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개인 판매자와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경매가 기본적인 판매 방식이며, 판매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관리한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이베이는 1999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로 동시 진입하였으며 2020년 기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약 6,230만 호주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했으며 약 10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도서, 의류, 개인 전자제품, 완구, 원예품, 장신구 등의 제품과 의류 맞춤, 웹사이트 개발, 미디어 개발 등의 서비스를 판매한다.
 - 특징: 개인과 기업들에게 신제품 또는 중고제품을 저가의 수수료로 경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접근성이 좋은 판매 환경에 개인 판매자가 희귀한 수집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완구 수집가들 대상 틈새시장을 개척하였다. 온라인 결제 솔루션, 페이팔(PayPal)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호주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인 애프터페이(afterpay)도 이용가능하다.
- 3) Kogan(www.kogan.com)
 - 개요: 코간은 호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2006년에 텔레비전 판매를 시작으로 창업해 다양한 전자제품 분야로 판매제품이 확대되었다. Kogan Marketplace 웹사이트를 통해 대형 벤더들이 판매가 가능하며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코간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4억9,800만 호주달러의 연매출을 달성하였다. 고용인원은 약 1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주로 텔레비전, 컴퓨터, 헤드셋, 게임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을 판매하며, 부수적인 계열사 운영으로 이동 통신 서비스, 보험, 인터넷, 전기, 여행상품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특징: Kogan Mobile, Internet, Insurance, Energy, Travel, Money, Cars 등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 4) Catch(www.catch.com.au)
 - 개요: 캐치는 카탈로그 위주로 운영되던 온라인 쇼핑물에 재미를 더하고자 설립된 호주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약 35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주 3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일 접속량이 100만 건에 이르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기업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6년에 호주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약 3억 3,000만 호주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현재 8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이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실내 장식품, 건강용품, 전자기기, 가구, 식료품 및 주류 등 가정용 생활용품 및 식품을 위주로 판매한다.
 - 특징: 일일 행사인 플래쉬 딜(flash deal)을 매일 다르게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전략을 쓰며, 호주 소매업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대형 유통사 그룹 Wesfarmers(Bunnings, Officeworks, Kmart 등을 소유)가 2,300만 호주달러에 인수했으며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 5) MyDeal(www.mydeal.com.au)
 - 개요: 마이딜은 호주에서 인기있는 생활용품, 원예용품들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호주 내 대형 유통사, 개인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판매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투자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신 기술을 지속 도입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1년 호주에서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1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판매를 이루었다. 고용인원은 약 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구, 소형 전자기기, 주방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주로 가정에서 쓰이는 제품들을 취급한다.
 - 특징: 타 플랫폼과 달리 생활용품 및 원예용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주 내 소비자들 대상으로 효율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징: 타 플랫폼과 달리 생활용품 및 원예용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주 내 소비자들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무역관의 밀착 지원으로 까다로운 호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

호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 10.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다수 호주 제조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호주가 아닌 타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 J사는 이러한 호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9년 4월 호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무역관과 협업하기 시작했다. J사는 무역관 지원 하에 약 30여 개 호주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무역관은 J사와 무역관 소재지 외 지역까지 동행 출장하며 지원했다. 현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테스트 및 제품 등록절차를 출시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빠른 생산업체 선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J사가 현지 유통 제품들이 한국만큼 포장방식이나 섭취방법이 간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품 컨셉 및 패키징을 현지 소비자에게 어필하도록 개발한 점도 유효했다.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부터 TV광고를 통해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으며 TV 홈쇼핑 외 호주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를 통하여 판매 중이다.

2) 호주 '뉴노멀' 뷰티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 수출 기업 발굴, 호주 바이어와 독점 계약

무역관은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로, 호주 여성들 사이에서 홈뷰티 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이미 널리 판매 중이지만 호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홈 마스크 패키지 상품을 제조하던 한국의 M사를 발굴했다.

제품력으로 승부하던 한국의 M사는 무역관으로부터 호주 수출 제안을 받고 현지 화장품 유통사인 L사와 3자 화상상담 및 샘플 교환을 통해 호주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 등을 논의했다. 포화상태인 국내 뷰티 시장에서 수익 확대를 고민하던 M사는 무역관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호주시장 첫 수출을 이루었으며, 2020년 10월 약 1만 달러를 수출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시즌에 맞추어 L사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 현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였지만 뛰어난 기능성으로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2021년에는 현지 호주 바이어사가 뷰티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독점 계약을 얻어내어 2021년 상반기 이미 2차례의 추가 발주를 통해 3만 5천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3) 국내 소상공인 기업, KOTRA 본사, 현지 무역관의 협력 하모니, 호주 최초로 흑염소 진액 수출

호주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그 높은 장벽을 뚫고 호주 최초로 흑염소 진액이 수출되었다.

강원도에서 흑염소 진액을 제조·판매하는 S사는 호주 바이어로부터 호주에서 흑염소 진액을 판매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출 경험이 없어 주저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국내기업의 호주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에서부터 동물 검역증 발급, 영문 영양소 라벨 제작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지원하였다. 무역관은 이와 동시에 한국 내에서의 오프라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KOTRA 지방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 수출전문위원은 직접 S사에 출근하듯 수차례 방문하여 막바지 수출 작업들을 마무리하였다. 친환경 사육 방식, 위생적인 제조 환경, 뛰어난 품질의 S사 상품과 KOTRA 지방지원단과 현지 무역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결과로 S사 흑염소는 2019년부터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지역 내 아시안 마트에 판매를 시작하였고, 2021년 5월 기준 약 10만 달러(누적)의 호주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4) 철저한 시장조사, 현지 유통사와 3년에 걸친 교신 끝에 보수적인 호주 농기계 시장에 진출

호주의 농업용 호스는 글로벌 기업이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2018년 호스 제조사 P사는 호주 시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주요 3개 도시 출장을 진행, 무역관과 전 일정을 동행하며 현지 바이어 10개사 이상을 만났다. 그 결과 소규모 유통사를 통한 직접 진출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에 무역관과 발굴해낸 잠재 바이어사와 OEM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바이어사의 사업 전환으로 취소된다.

하지만, P사는 좌절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현지 시장에서 P사의 제품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019년, P사는 무역관과 함께 현지 농업 전시회에 참여해 호주 시장 주요 유통사들과 미팅하며 접촉점을 마련했다. P사 대

표는 주로 유통사들 임원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품 및 제조 역량을 홍보했다. 결국 해당 전시회에서 만난 대형 유통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신규 제품을 연구개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된 대형 유통사 중 한 곳이 2020년 한국 P사의 공장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P사와 무역관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화상상담을 상시 진행해 양사간 요청사항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물류 대란 속에서 어렵게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다. P사가 코로나19에 굴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호주 시장 진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지 유통사는 더욱더 신뢰를 얻게 되었다. 결국 양측은 OEM 제품생산을 결정하고 연중 정식 오더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2021년 호주 유통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현지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P사와 향후 제품 확장을 위한 신규 제품개발 프로젝트까지 협의한 상황이다. 또한, P사는 호주 시장 진출을 레퍼런스로 해당 유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북미, 동남아 시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 기회를 얻었다.

호주의 보수적인 농업 시장도 약 3년여에 걸친 P사와 무역관 협업으로 결국 수출의 문이 열린 셈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호주 방문을 위한 관광, 상용 비자는 호주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20호주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자여행허가인 ETA(Electric Travel Authority)를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이렇게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개 12시간 이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는 간혹 승인되기 전에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적합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TA 비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정보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home.html> 참조)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3월 20일 부 호주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호주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11월 1일 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들의 직계가족에 한해 사전 입국 제한 면제 신청을 통한 입국을 예외 허용하고 있다. 12월 현재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일본) 국적 소지자에 대해 입국 제한 면제 신청 없이도 호주 정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021년 12월 15일 부 한국 국적 소지자는 호주의 국제 안전 여행 지역(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요구되던 여행 면제 신청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

- ①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
- ② 한국 국적 소지
- ③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 입국 (다른 국가 경유편 불가능, 제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바로 입국할 경우 가능)
- ④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관련 정보 <https://www.tg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es-recognised-australia>)
- ⑤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⑥ 출발 72시간 전까지 호주 입국신고(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작성 및 신고 완료

동일 시한 부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하며, 기존에 요구되던 여행 면제 신청은 불요하다.

- ①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 ②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③ 출발 72시간 전까지 호주 입국신고(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작성 및 신고 완료

28개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기술 노동자 비자 등이 비자가 포함이 되어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타 국가 경유편으로도 호주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해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해야 한다.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국내 거주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의 해외여행도 2021년 12월 현재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이 가능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이전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관련 정보 <https://covid19.homeaffairs.gov.au/leaving-australia#toc-2>)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호주 입국 시 10,000호주달러 이상(또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을 휴대 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 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 휴대품 면세한도

검역부(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등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150~300호주달러 상당)이 부과되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호주 입국 시 일부 방문객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세금 등의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입국 심사도 훨씬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통관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

○ 허용되는 면세 물품 범위(18세 이상의 성인만 적용)

- 900호주달러까지의 면세품은 허용되나 담배나 주류제품은 제외(18세 미만인 사람에게서는 450호주달러까지만 허용)
- 2.25리터의 주류제품 허용
- 담배 25개비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초과 반입 불가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 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한국 간의 담배가격이 5~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호주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게 되며 입국 심사 시간도 2배가량 더 걸리기 때문에 25개비 이상 담배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골프화나 운동화를 지참할 경우에도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을 시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호주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61 2 6270 4100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비고	강정식 대사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61 2 9210 0200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비고	홍상우 총영사

○ 주 멜번 대한민국 분관

전화번호	+60 3 9533 3800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비고	전한일 총영사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61 2 9252 4147
주소	1807/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visitkorea.org.au
비고	이인숙 지사장

○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번호	+61 2 8907 3000
------	-----------------

주소	Suite 1101/50 Berry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홈페이지	https://www.komir.or.kr/kor
비고	김경호 법인장

○ 시드니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61 2 8267 3400
주소	Ground floor, 255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koreanculture.org.au
비고	김지희 원장

○ 호주 시드니 한인회

전화번호	+61 2 9798 8800
주소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au
비고	강흥원 회장

○ 호주 퀸즐랜드주 한인회

전화번호	+61 424 724 624
주소	1406 Beenleigh Road Kuraby QLD 4112
홈페이지	http://www.ksqld.org
비고	김혜연 회장

○ 호주 골드코스트 한인회

전화번호	+61 7 5594 7533
주소	PO BOX 7968 Bundall QLD 4217
홈페이지	http://www.qldkorean.com
비고	전주한 회장

○ 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

전화번호	+61 452 355 576
주소	PO BOX Huntingdale Huntingdale VIC 3166

홈페이지	https://koreansociety.com.au/
비고	김서원 회장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호주 무역투자진흥공사(AUSTRADE)

전화번호	+61 2 9392 2000
주소	Level 7, Tower 3, International Towers, Barangaroo,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austrade.gov.au

○ 호주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전화번호	+61 2 6261 1111
주소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홈페이지	http://www.dfat.gov.au

○ 호주 관세청(Australian Border Force)

전화번호	+61 131 881
주소	10 Cooks River Drive Mascot NSW 2020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

○ 호주 농림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전화번호	+61 2 6272 3933
주소	18 Marcus Clarke St, Canberra ACT 2601
홈페이지	http://www.agriculture.gov.au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전화번호	+61 13 72 26
주소	Woden Service Centre, Penrhyn House, 6 Bowes St Woden ACT 2606
홈페이지	http://www.ato.gov.au

○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전화번호	+61 2 9268 4909
주소	ABS House 45 Benjamin Way, Belconnen ACT 2617
홈페이지	http://www.abs.gov.au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전화번호	+ 61 3 5177 3988
주소	Level 5, 100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asic.gov.au

○ 호주 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전화번호	+61 2 9227 0000
주소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2.asx.com.au/

○ 호주 국가표준 감독(Standards Australia)

전화번호	+61 2 9237 6171
주소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standards.org.au

○ 호주 지재권감독정부기관(IP Australia)

전화번호	+61 2 6283 2999
주소	Ground Floor, Discovery House, 47 Bowes Street Phillip ACT 2606
홈페이지	http://www.ipaustralia.gov.au

○ 호주 해외투자승인기관(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전화번호	+61 2 6216 1111
주소	The Treasury Langton Crescent Parkes ACT 2600
홈페이지	http://www.firb.gov.au

○ 녹색산업대표단체(Clean Energy Council)

전화번호	+61 3 9929 4100
주소	Level 15, 222 Exhibition Stree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www.cleanenergycouncil.org.au

○ 호주 에너지공급기업대표단체(Australia Energy Council)

전화번호	+61 3 9205 3100
주소	Level 14, 50 Market Street Melbourne 3000
홈페이지	http://www.energycouncil.com.au

○ 호주 공영방송기관(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전화번호	+61 1800 500 727
주소	14 Herbert Street, Artarmon NSW 2064
홈페이지	http://www.sbs.com.au

○ 나인 네트워크 방송(Nine Network)

전화번호	+61 2 9156 6999
주소	Australia Square,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nine.com.au

○ 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The Australian)

전화번호	+61 2 9288 3000
주소	2 Holt Street, Surry Hills NSW 2010
홈페이지	http://www.theaustralian.com.au

○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Sydney Morning Herald)

전화번호	+61 2 9282 2833
주소	1 Denison St, North Sydney, NSW 2060
홈페이지	http://www.smh.com.au

○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전화번호	+61 2 6289 1555
주소	GPO Box 9848, Canberra ACT 2601
홈페이지	https://www.health.gov.au/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NSW Government)

전화번호	+61 2 9228 5555
주소	5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nsw.gov.au/

○ 빅토리아 주정부(Victoria Government)

전화번호	+61 3 9651 5111
주소	1 Treasury Place, Melbourne, VIC 3002
홈페이지	https://www.vic.gov.au/

○ 퀸즐랜드 주정부(Queensland Government)

전화번호	+61 7 3328 4811
주소	1 William Street, Brisbane, QLD 4002
홈페이지	https://www.qld.gov.au/

○ 서호주 주정부(Western Australian government)

전화번호	+61 8 6552 5000
주소	Dumas House, 2 Havelock Street, West Perth, WA 6005
홈페이지	https://www.wa.gov.au/

○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

전화번호	+61 2 7966 6900
주소	1 Darling Island Road, Pyrmont NSW 2009
홈페이지	https://www.afr.com/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41 AU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8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2.800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11.4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8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600ml	0.6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600ml	2.700
8	의료	항생제(Amoxicillin)	20정	6.4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3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6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6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8.4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2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성인	16.3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레드)	1갑	35.1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8.500
18	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법정최저	14.4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최대)	연간	284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100

<자료원 :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p>화폐 단위는 Australian Dollar(AUD\$)이며, A\$ 1 = 100 Cents이다.</p> <p>지폐의 종류는 A\$ 100, 50, 20, 10, 5 등, 총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1, Cents 50, 20, 10, 5 등 6종이 있다.</p> <p>호주 준비은행은 호주 차세대 화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A\$ 5권과 A\$ 10권 지폐를 각각 발행하여 현재 구권과 신권이 함께 통용 중에 있다.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에는 A\$ 50권 및 A\$ 20권 신권을 각각 발행하였으며 2020년 10월에는 A\$ 100 신권을 발행하였다.</p>
-------------	---

환전방법

호주 내 환전은 호주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가능하지만 원화 환전이 불가하거나 수수료가 상이해 한국에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환율 우대를 적용받거나 환율 우대 쿠폰을 사용해 환전하는 것이 좋다. 환전 시에는 창구에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이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상점 및 음식점, 자판기, 야외 마켓 등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일부 소형 카페나 음식점, 상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이 경우, 입구 또는 계산대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별 상이한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카드별로 취급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어 결제시 확인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호주이지만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철 주요 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아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은 8시 전후, 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하교길을 차로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아 학교 근처 등하교 시간은 출퇴근을 위해서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 지역이다.

호주에서 지하철은 트레인이라고 부르며 시드니의 경우, 시드니 중심상업지역에서 사방의 주거 지역, 소도시, 장거리 도시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시드니에는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 이용하는 고속버스가 없어 대부분 트레인을 이용하는데 Train Work라고 불리는 점점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앱 또는 역사 근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경우, 대체 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호주 대도시 내 도로 면적은 좁으나 인구 유입 및 도시는 지속 팽창하고 있어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들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 및 터널 신설, 철도 라인 연장 또는 라이트 레일(Light Rail, Tram) 신설, 도로 면적 확대 등이 있으며 2020년부터는 자전거 도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드니의 경우 트레인, 버스, 트램 이용 시 통용되는 대중 교통카드는 오팔카드(Opal Card)이며 어린이, 학생, 노

약자용 카드가 별도로 있다. 구매는 호주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일부 편의점, 신문가판대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에서는 별도 판매하지 않는다. 일반 성인용 오펜카드의 최저 충전 금액은 A\$ 20.00이며 운임은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데 10km 미만 메트로 또는 트레인의 기본요금은 (A\$ 3.66) 이고 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 A\$ 2.56이다. 대중 교통 이용시 승하차 각 1번씩 오펜카드를 읽혀야 왕복 구간 요금이 청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금 더 비싼 편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시드니 대중교통 이용안내: <https://transportnsw.info/tickets-opal/opal#/login>

멜버른의 경우 마이키 카드(Myki Card)를 구매해야 하며 (A\$ 4.50 / 2시간, A\$ 9.00/ 1일) 메트로, 버스, 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멜버른 대중교통 이용안내: <https://www.ptv.vic.gov.au/tickets/myki>

버스

시내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드니 지역은 나이트라이드(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다가오면 손을 가볍게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야만 버스가 정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쳐 갈 수 있다. 버스 요금은 버스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미리 지역별 버스카드 또는 현지 신용카드로 지불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버스 승차 시 입구와 하차 출구에 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승차시와 하차시 각각 한 번씩 카드를 읽혀야(Tap on/off) 정확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일단 승차한 후, 버스 안에서 버스 정류장 안내 멘트나 표시가 따로 없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 기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드니의 버스요금은 오펜카드 이용 시 성인기준 0~3km 구간 A\$ 3.2(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A\$ 2.24), 3~8km 구간 A\$ 3.79(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A\$ 2.65), 8km 이상 A\$ 4.87(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A\$ 3.40) 이다.

멜버른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이용하며 마이키 카드(A\$ 4.50 / 2시간, A\$ 9.00/ 1일)로 탑승이 가능하다. 자정 이후 도시에서 교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나이트라이더(NightRider) 버스이다. 나이트라이더는 콜린스 거리(Collins Street)와 플린더스 거리(Flinders Street)사이의 스완스톤 거리(Swanston Street)에서 탑승하며, 토요일은 자정부터 새벽 3시30분 사이, 일요일은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 사이 3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한다.

택시

호주의 버스, 전철 등의 대중 교통편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호주의 초행길인 출장자가 자칫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약속 시각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의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약 A\$ 3.60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A\$ 2.19가 부가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1Km당 A\$ 2.63이 부가된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의 26킬로미터 미만으로 정체된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1분당 94센트가 부가된다. 그 외에도 시내 외 산재해 있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공항 특별요금(A\$ 4.10), 예약비(A\$ 2.50) 등 각종 추가 요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심 지역이나 모든 전철역에는 택시들이 많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번두리 지역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부르면 10분 안에 주변에 머물던 택시가 픽업을 하러 오나, 영어에 문제가 있거나 주소를 모르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 관광 안내책자를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돼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중간마다 비치된 안내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권쯤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지역별 지도, 전철 노선도, 기타 가볼 만

한 곳, 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현재 호주 내 대도시에서는 공유 차량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공항 및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 차량 이용객들을 위한 승하차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모바일 앱 이용이 수월하다면 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예상 소요 시간 및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트램

시드니에는 라이트 레일(Light Rail)이라고 불리는 트램이 있다(멜버른에서는 트램이라고 지칭함). 라이트 레일은 달링하버와 차이나타운을 경유하여 센트럴 스테이션과 덜치힐 구간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구간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6시부터 23시까지 운행되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0~3km 구간 기본요금 A\$ 3.20이며, 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 A\$ 2.24 이소요되어 버스와 동일하다.

멜버른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트램일 정도로 트램은 멜버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도시의 다운타운은 물론 시내 주요 지점에서 리치몬드, 세인트 킬다, 야라 남부 등의 교외까지 연결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5시부터 시작하여 자정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24시간 운행되며 주요 트램 역에서는 버스와 기차와도 연계할 수 있다.

페리

시드니에는 페리라고 불리는 수상 교통수단이 있다. 총 8개의 노선이 있으며 시드니 시티 서큘러키 항을 기점으로 운행된다. 페리는 출퇴근 및 일반 교통수단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관광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페리 운행시간은 날씨, 구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NSW Transport 홈페이지 또는 항구 전광판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0~9km 구간 A \$6.21로 비싼 편이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기에 따른 주 통신사의 플랜(약정) 정보를 검토한 뒤 마음에 드는 통신사를 선택, 해당 매장에 방문해야 한다. 주 통신사로는 텔스트라, 옴터스, 그리고 보다폰이 있는데 통신사별로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 각 사 별 수신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텔스트라의 수신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텔스트라는 옴터스와 보다 폰 대비 통화료가 비싼 편이고, 제공되는 혜택은 텔스트라보다 나을지 모르나 지역에 따라 수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주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중저가 통신사들도 존재하니 수신율 및 상품 특징을 살펴보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매월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을 계약하면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고 매달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다면 플랜(약정)이 없어도 개통할 수도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기세 혹은 은행명세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의 경우 텔스트라, 옴터스, 보다폰 대형 브랜드 외에 좀 더 저렴한 TPG 등 다양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PG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텔스트라나 옴터스에 비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텔스트라와 옴터스로부터 라인을 할당받은 중소 ISP 업체들이 대형통신사와의 경쟁하기 위해 보다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 ISP는 TPG, iiNet, Exetel 등이 있다. 광통신망 NBN 상품의 이용가격은 월 A\$ 65~95선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업체는 통상 최소 1년에서 2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데 선불(Prepaid) 방식의 무선인터넷(4G)을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장비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

도시명	멜버른
주소	Great Ocean Road, VIC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키(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rnambool)에 이르는 300km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다양한 형상의 바위섬과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 필립 아일랜드 자연공원(Phillip Island Nature Parks)

도시명	멜버른
주소	1019 Ventnor Road, Ventnor, VIC 3922
운영시간	월~일: 9~17시
휴무일	성탄절
명소소개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해가 진 이후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 피츠로이 정원(Fitsroy Garden)

도시명	멜버른
주소	Wellington Parade, East Melbourne VIC 3002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VIC)가 뉴사우스웨일즈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도시명	멜버른
주소	Queen Street, Melbourne VIC 3000
운영시간	화,목,금: 6~15시, 토: 6~16시, 일: 9~16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명소소개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했다.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

○ 단데농 마운틴 전망대(SkyHigh Mount Dandenong)

도시명	멜버른
주소	26 Observatory Road, Mount Dandenong VIC 3767
운영시간	월~목: 9~21시, 금~일: 9~22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단데농 마운틴은 멜버른 도심의 30km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망대에서 멜버른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단데농 마운틴은 부드러운 굴곡을 이룬 야라 밸리(Yarra Valley)가 바로 옆에 있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최고 와인 생산지로 손꼽힌다.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토: 9시~20시 30분, 일: 9~17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957년 1월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 ~ 1973.9에 완공됐다. 매년 평균 약 3,000회의 행사와 200만 명 가량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도시명	시드니
주소	Mrs Macquaries Roa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금: 7시~17시30분, 토, 일: 7시~17시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다. 1816년에 설립되었으며, 면적은 약 54헥타르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 공원으로 애용된다.

○ 하이드 파크(Hyde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5~24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됐다.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다.

○ 세인트 메리 대성당(St Marys Cathedr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2 St Marys Roa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6시30분~18시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68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건설되었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다.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이다.

○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 National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23-31 Echo Point Road, Katoomba NSW 2780
운영시간	월~일: 9~17시
휴무일	성탄절
명소소개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대협곡이다.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지이기도 하다.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다.
비고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주소는 최대 명소인 에코 포인트로 기재

<자료원 : City of Sydney, City of Melbourne, 명소별 대표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레어 스테이크하우스(Rare Steakhouse)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663 3373
주소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화~금: 12~15시, 화~토:17시30분~21시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스테이크, 립(갈비) 등이다.

◦ 그라디 크라운(Gradi Crown)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292 5777
주소	Whiteman St, Southbank VIC 3006
가격	A\$ 30~40
영업시간	월~목, 일: 12~23시 금, 토: 12~24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이탈리아 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피자, 파스타 등이다.

◦ 하이어 그라운드(Higher Ground)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8899 6219
주소	6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0 ~30
영업시간	일~수: 8~16시, 목~토: 8~22시
휴무일	성탄절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멜버른에서 유명한 카페로 주요 메뉴는 브런치, 런치, 퓨전요리 등이다.

◦ 키수메(Kisumé)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671 4444
주소	175 Flinders Ln, Melbourne VIC 3000
가격	A\$ 50~70
영업시간	월: 17~22시 화~일: 12~14시30분, 17~22시
휴무일	성탄절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모던 일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스시, 사시미, 해산물, 육류 요리 등이다.
----	---

○ 더 미트 앤 와인 코(The Meat and Wine Co)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629 8888
주소	Ground level,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수~일: 12시~22시(금요일, 토요일은 23시 마감)
휴무일	월요일, 화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육류 및 해산물 꼬치 요리, 스테이크, 립(갈비) 등이다.

○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Kingsleys Steakhous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95 5080
주소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월~토: 12~15시,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스테이크, 구운 생선 등이다.

○ 리롱 바이 테이스트 오브 상하이(Lilong by Taste of Shanghai)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478 885 781
주소	1 Little Hay St, Haymarket NSW 2000
가격	A\$ 15~60
영업시간	월~토: 11시30분~21시, 일: 11시30분~20시30분
휴무일	없음
소개	중국의 북부 지역 및 상하이 스타일의 중식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딤섬 외 해산물 및 육류 요리로 메뉴가 다양하다.

○ 골든 센츄리(Golden Century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12 3901
주소	393-399 Sussex St, Sydney NSW 2000
가격	A\$ 30~50
영업시간	일~수: 12~익일 10시, 목~토: 12시~24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바다가재, 왕게, 새우, 전복 등 해산물 요리 등이다.

○ 카페 시드니(Cafe Sydney)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51 8683
주소	5 Sydney Customs House, 31 Alfred St, Sydney NSW 2000
가격	A\$ 30~50
영업시간	월~토: 12시~22시, 일: 12시~16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모던 호주식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해산물, 생선, 스테이크 등이다.

○ 찻 타이(Chat Thai)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11 1808
주소	20 Campbell Street, Haymarket NSW 2000
가격	A\$ 15~30
영업시간	월~일: 11시~22시
휴무일	없음
소개	태국식 전문 레스토랑으로 시드니 중심부 태국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메뉴는 태국식 누들, 커리, 해산물 요리 등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만두(Mahn doo)

도시명	멜버른
-----	-----

전화번호	+61 3 9670 1167
주소	365 La Trobe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월~일: 17시30분~2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만두, 한식찌개, 비빔밥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궁(Guhng The Palace)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041 2192
주소	19 McKillop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30
영업시간	월~토: 18~22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한식 바베큐, 요리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북창동 순두부(Dooboo)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406 712 47
주소	261 Swanston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월~목: 11시 ~21시 30분, 금~토: 11시 30분 ~22시, 일:12~21시

◦ 스시 앤 그릴(Sushi and Grill)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888
주소	LG 119 York St, Sydney, NSW 2000
가격	A\$ 13~20
영업시간	월~금: 11시30분~14시30분, 17시30분~21시30분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소개	주로 일식을 판매하고 있으나 한인 교민이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김치볶음밥, 회덮밥 등 일부 한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메뉴는 스시, 사시미, 회덮밥, 우동, 카레 등이다.
----	---

◦ 단지(Danje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084 9041
주소	1-7 Albion Pl, Sydney NSW 2000
가격	A\$ 18~50
영업시간	월~일: 12시~15시, 17시~2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시드니 마당(Sydney Madang Korean BBQ)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010
주소	371A Pitt St, Sydney NSW 2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화~목, 일: 12시~익일 10시 금, 토: 12시~익일 11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으로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식당이다.

◦ 코기 (KOGI Korean BBQ)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042 1637
주소	Level 3 Market City, 9-13 Hay St, Haymarket NSW 2000
가격	A\$ 15~50
영업시간	화~목: 17시~21시, 금~일: 12시~22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한식 바베큐이며 모던한 인테리어에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본가(Bornga Korean BBQ Restaurant)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417 054 555
주소	Level 1/78 Harbour St, Haymarket NSW 2000
가격	A\$ 20~50
영업시간	월~목: 17시~22시30분, 금~일: 16시30분~23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한식 바비큐 및 요리 등이며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옥스 온 마켓(Oaks on Market)

도시명	멜버른
주소	60 Market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8631 1111
홈페이지	https://www.oakshotels.com/en/oaks-on-market
숙박료	A\$ 204~29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콘도형 호텔로 방에 부엌 및 취사도구 구비되어 있다. 시내 야라강과 쇼핑센터 등의 중심지와 근접하다.

○ 인터콘티넨탈 멜버른(InterContinental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495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8627 1400
홈페이지	https://www.melbourne.intercontinental.com
숙박료	A\$ 285~3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멜버른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던크로스(Southern Cross)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객 미팅이 가능한 카페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 호텔 그랜드 찬슬러(Hotel Grand Chancellor)

도시명	멜버른
주소	131 Lonsdale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9656 4000
홈페이지	http://www.grandchancellorhotels.com/au/melbourne/
숙박료	A\$ 169~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비즈니스 호텔로 방 사이즈가 작은 편이며 인터넷은 무료이다. 시내 쇼핑센터 및 백화점, 중심지와 근접해 접근성이 좋은 호텔이다.

○ 상그릴라(Shangri-La)

도시명	시드니
주소	176 Cumberland Street, The Rocks,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9250 6000
홈페이지	http://www.shangri-la.com/sydney/shangrila
숙박료	A\$ 250~4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윈야드(Wynyard)역 또는 써쿨러키(Circular Quay)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161 Sussex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099 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australia/hyatt-regency-sydney/sydrs
숙박료	A\$ 180~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가 달링하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운홀(Town Hall)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레노베이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이 깨끗하며 주변에 고객 미팅이 가능한 카페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 메리톤 스위트(Meriton Suit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528 Kent S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263 5500
홈페이지	https://www.meritonsuites.com.au/our-hotels/nsw/

숙박료	A\$ 140~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 아파트먼트 호텔로 알려져 있다. 시드니 CBD에는 Kent street과 World Tower 두 개 지점이 있으며 객실 안에 키친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장기 숙박시 유용하다.

<자료원 : 호텔별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o 오지하우스 게스트하우스(OZiHOUSE)

도시명	멜버른
주소	176 Hoddle St, Abbotsford VIC 3067
전화번호	+61 3 9867 6882
홈페이지	https://ozihouse.com/
숙박료	A\$ 30(1인당, Room 타입에 따라 상이)
소개	2012년에 설립된 멜버른 최초로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한인경영의 장, 단기 체류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서 모든 지점이 멜버른 시티에서 대중교통으로 10분 내외에 위치해 있다.

o 다나네 테라스하우스(Danane Terrace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9 Crystal Street Waterloo NSW 2017
전화번호	+61 434 311 665
숙박료	A\$ 95(싱글룸)
소개	시드니공항에서 2정거장 거리의 테라스하우스로 시내와도 가까워(기차 2-3정거장) 단기 여행자 및 해외 출장자들에 적합하다.
비고	임시휴업

o 시드니 한우리 게스트하우스(Hanwoori Guest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460 Old Northern Rd, Dural NSW 2158
전화번호	+61 2 8443 0188
숙박료	A\$ 45(1인당, Room 타입에 따라 상이)
소개	시드니 시내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근처 비즈니스 파크로 이동할 계획인 출장자들에 적합하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며, 숙소는 1인실에서부터 3인실까지 다양하다.
비고	임시휴업

사. 치안

치안상황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흥기나 충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도시가 아닌 번두리 주택가, 소규모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주말에는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괜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호기심에 주말에 유흥가를 전전하는 행위는 불행한 사고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하도록 한다.

호주는 경찰의 권한과 권위가 보장돼 있어 범죄자들도 경찰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혹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연행을 당할 경우 반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호주에도 마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흥가 등지를 중심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에서도 마약은 불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나 술집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약이나 음료를 절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안전한 곳에 정차: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나는 것은 호주법상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 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고등을 켜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차가 정차해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체크: 본인을 포함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안전한지도 확인한다. 만약, 부상자가 긴급한 위험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경우 선불리 부상자를 옮기지 않도록 한다.

○ 긴급 구조 서비스 및 경찰에 전화: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000을 통해 긴급 구조 센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정보 교환: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상대방과 여전히 연락처를 교환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 모두 아래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
-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회사, 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과 제조사 및 모델명)
-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관의 이름, 경찰서, 연락처

○ 보험회사에 연락: 본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이름, 연락처, 차량 소유주와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번호
- 차량 정보(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 차량 제조사 및 모델)
-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정보
- 사고 개요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주가 소요(본인 비용 부담으로 DHL 서비스 이용 시 1~2주)된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 단수여권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여권용 사진 2매 및 호주에서 출국하는 비행기 표가 추가로 요구된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및 공관 내 구비)
- 한국 또는 호주 신분증(없을 경우 지문으로 확인 가능)
- 여권 사진(공관에서 여권 사진 촬영 가능(무료))
- 여권수수료(여권 형태 및 신청자 연령 등에 따라 A\$ 39~68.9 으로 현금만 가능)

주호주 한국대사관 호주 수도인 캔버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사관은 시드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공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호주 한국대사관: +61-2-6270-4100
- 시드니 총영사관: +61-2-9210-0200
- 주멜번 대한민국분관: +61-3-9533-3800

3) 응급 전화번호

호주의 응급 전화번호는 경찰, 소방서, 구급차 모두 000번으로 통합돼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000번을 누르고 Police(경찰), Ambulance(응급차), Fire(화재) 중 상황을 말하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000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 개인 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앰블런스를 부를 경우 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A\$ 400~1,000을 내야 하며 응급치료비도 상당히 비싸다.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요 고려사항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산, 지역, 교통이다. 특히 교통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비 대중교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장에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트레인 역과 가깝고 트레인을 대체할 버스 노선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 외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자녀가 있다면 취학할 학교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주택 중개 사이트

호주에서 주택 물색은 주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집을 둘러보는 인스펙션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다. 또는 사전에 부동산에 연락하여 원하는 매물 또는 임차 주택 조건을 알려준 후, 연락이 오면 에이전트와 예약 후 집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당일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주요 중개 사이트에는 Domain.com.au 또는 Realestate.com.au가 있으며 지역마다 체인을 보유한 부동산 업체들로는 Ray White, First National, Raine & Horne, LJ Hooker 등이 있다.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 방문하여 확인하기

호주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인스펙션은 주로 평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한 매물에 한 명의 에이전트가 여러 방문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식이며 시간은 10분~15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도 에이전트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매물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 후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호텔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 이 운영하는 민박에 거주하면서 제반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 기준 1실의 한 달 민박료는 식사 포함 1,500호주달러 전후이다.

○ 신청서 제출

임대물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을 때 바로 신청서(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가능한 한 임대인이 선택하기 좋은 정보를 작성해야 주인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다. 최근 임대 기록, 보증인, 직업, 연 수입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100포인트 이상의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4건의 임차인 기록이 40포인트, 여권이 30포인트, 호주 운전 면허증이 30포인트, 재직증명서 20포인트, 의료보험카드 10포인트, 자동차 등록증 10포인트 등이다.

인기 주거 지역의 경우 임대 수요가 높아 고민하는 중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 매물이 계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수요가 많은 임대물은 수요자가 몰려 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다른 세입자

를 선택할 수 있다.

◦ 보증금 및 집세 내기

집주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승인되면 에이전트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계약금(Deposit) 지불하게 된다.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주 또는 2주 치 집세가 계약금으로 책정되며 보증금(Bond) 4주치 집세로 이사 하기 전 지불한다. 계약서는 보통 이사 들어오기 전 작성하는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주인 대행으로 모든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집주인을 직접 대면할 일이 거의 없다.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지불하는 것이 아닌 해당 거주 지역 주정부 산하 위원회에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양식 (inspection form 또는 condition report)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해당 양식 작성 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사진 촬영을 해 해당 양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화

일반 전화라인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신사인 텔스트라 또는 옵터스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가 있다. 텔스트라에 비해 옵터스는 서비스 가능지역이 한계가 있으나, 텔스트라에 비해 기본요금과 통화료가 저렴한 편이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보통 신청 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게 되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달라고 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http://www.telstra.com.au> 또는 <https://www.optus.com.au>)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다수 있는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NBN)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4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이중 아래 1구는 접지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한인(교민) 식품점을 이용하면 2~5호주달러 사이로 저렴한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현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트래블 어댑터(Travel Adaptor)를 요청하면 되며 가격은 25~50호주달러로 다양하다. 가정용 교류제품은 표시 전압은 평균이기 때문에 20V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전열제품 같은 전력소모가 큰 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수

일반적으로 호주 식당에서는 탭 워터(Tap Water)라고 하여 수돗물을 무료 식수로 제공한다. 이처럼 많은 호주인들은 수돗물도 양호하기 때문에 식수로 통상 마신다. 생수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PB(Private Brand) 제품이나 일반 생수 브랜드 제품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호주 생활에 있어 자동차 구입은 필수라 하겠다. 대중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시설 면, 용량 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구입에 있어 우선 결정할 사항은 신차를 구입할 것인지 중고차를 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호주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체제 기간 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

시드니 지역의 경우 중고차 매매 점은 파라마타 로드(Parramatta Road), 멜버른은 링우드(Ringwood)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소재해 있다. 그 외 자동차 브랜드별로 한국인 담당자들이 한 명씩은 근무하고 있어 영어를 못 해도 차량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고차 매매로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www.carsales.com.au, www.carsguide.com.au 등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매물의 가격이 딜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때 사고기록, 차량 보증기간, 차량 등록 기한, 명의 이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로 성장하면서 개인이 아닌 딜러들이 더욱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 최대 판매 및 구입자가 딜러가 되어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으로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차 상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매를 통해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경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검색하고 경매 해당 요일에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입찰을 참여하면 된다. (관련 홈페이지: www.pickles.com.au)

차량가격

호주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높아 비교적 자동차 가격이 높은 편이다. 특히 고급 차의 경우, 고급차세(luxury car tax)가 적용되어 한국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중고차 구매 및 판매 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카세일즈: www.carsales.com.au
- 드라이브: www.drive.com.au

차량 가격은 출시연도, 브랜드 및 모델별로 상이하나, 예시로 2021년 9월 기준 Carsguide(www.carsguide.com.au)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2021년 출시 현대 i30(해치백) 오토의 신차 가격은 평균 25,420 호주달러부터 시작하고, 2021년 출시된 기아 소렌토 오토의 신차 가격은 평균 49,850 호주달러부터 판매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응시할 수 있고, 기출 문제가 교통관리국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주행 시험의 경우 통상 몇 주 정도 개인 강사에게 수강을 받은 후 응시하게 된다. 최근 초보운전면허(P 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옴에 따라, 실기 시험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편이다.

NSW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운전하여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https://roads-waterways.transport.nsw.gov.au/>)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경력자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준다. NSW주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4.5톤 이하 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면허에 해당하는 보통 면허이며, 임시체류자의 경우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과 영문번역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 기간 내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교환할 필요는 없다. 교환 발급 시,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 및 천공처리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별 운전면허 발급신청서
-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영문번역본(영문번역본은 NATTI 번역인증, 대사관/총영사관 번역문 인증을 인정하나, 국제운전면허증도 영문번역본으로 인정함)
- 신분증명서(여권, Medicare 카드)
- 각주 관할 지역 내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임대계약서 전기, 전화 등 기타 유틸리티 납부통지서 등)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청서(온/오프라인 수령 가능)

VIC주에서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현 소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VIC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관련 기관: <http://www.vicroads.vic.gov.au/>)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호주 내 주요 상업은행으로는 Commonwealth, Westpac, NAB, ANZ 등이 있으며, 네 은행의 시장 점유율만 80%에 육박하여 이 은행들을 총칭할 때 종종 'Big 4'라고 부른다.

- Commonwealth (CBA): 호주 내 가장 많은 지점과 ATM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이동이 잦은 고객에게 추천한다.
- Westpac: 호주에 도착하여 처음 계좌를 개설할 경우 12개월간 계좌 유지비가 면제된다. 호주 전역에 약 1,100개의 지점과 2,000여 개의 ATM을 운영하고 있다.
- NAB: 네 은행 중 유일하게 계좌유지비(Account fee)를 청구하지 않는다. 당행 또는 타행 송금이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 ANZ: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뉴질랜드로 이동이 잦은 고객에게 추천한다. 고객 서비스 센터(번호: 13 13 14)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10대 기업 순위 안에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주는 선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광산 투자 및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전문 금융기관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주요 글로벌 은행으로는 HSBC, ING가 있으며 Citi 은행의 경우 2021년 4월, 일반 고객 대상 리테일 बैं킹 업무를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계좌 개설방법

호주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별로 수수료, 이자율이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은행을 선택한 후 준비물을 챙겨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준비물로는 여권, 국내외 연락처, 국제운전면허(선택), 호주 거주지 주소, 학생증(학생일 경우), 소정의 현금(입출금 확인용)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은행카드(Keycard)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बैं킹, 수표책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호주 은행은 한국과 달리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호주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여섯 자리의 BSB number라는 것을 발급하는 데 이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 정보이다. BSB number는 은행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BSB number와 Account number를 합하여 한국의 계좌 번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호주 은행은 매달 평균 5달러의 '계좌 유지비(Account fee)'를 청구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특정 조건에 한하여 유지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본 후 은행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은행계좌 개설 시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는데 호텔 주소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주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차후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s) 송부, 수표책 송부 시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점은 호주 입국 후 6주가 지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므로 6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할 것을 추천한다.

호주의 은행들도 모바일 앱 사용을 권장하며 계좌와 연동된 카드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체크카드처럼 결제용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없음.

- 현지학교

○ 맥किन 공립학교(McKinnon Secondary College)

도시명	멜버른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남녀공학이며 멜버른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12km 거리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다. 미술, 음악,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학비	약 A\$ 16,200~18,200/연
홈페이지	https://www.mckinnonsc.vic.edu.au/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자료원 : 주정부교육부 및 학교별 홈페이지>

마. 병원

○ 알프레드 병원(Alfred Hospital)

도시명	멜버른
주소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전화번호	+61-3-9076-2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alfredhealth.org.au

○ 로얄 어린이 병원(Royal Children's Hospital)

도시명	멜버른
주소	50 Flemington Rd, Parkville VIC 3052
전화번호	+61-3 -9345-5522
진료과목	소아과
비고	홈페이지: www.rch.org.au

○ 멜버른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41 Victoria Parade, Fitzroy VIC 3065
전화번호	+61-3- 9231-22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svhm.org.au

○ 시드니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390 Victoria Street Darlinghurst NSW 2010
전화번호	+61-2-8382-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svhs.org.au

○ 이스트우드 로얄병원(Royale Eastwood Medical Centre)

도시명	시드니
주소	Suite 101, Level 1 2 Rowe St Eastwood NSW 2122
전화번호	+61-2-9858-3877
진료과목	일반진료
비고	홈페이지: https://royalehealth.com.au 한국의사 있음

○ 노웨스트 사립 병원(Norwest Private Hospit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11 Norbrik Drive, Bella Vista NSW 2153
전화번호	+61-2-8882-888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norwestprivatehospital.com.au

○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Cnr Hawkesbury Road and Darcy Road, Westmead, NSW 2145

전화번호	+61-2-8890-55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wslhd.health.nsw.gov.au/Westmead-Hospital/About-us

○ 시드니 어린이 병원-랜드윅(Sydney Children's Hospital-Randwick)

도시명	시드니
주소	High St, Randwick, NSW 2031
전화번호	+61-2-9382-1111
진료과목	소아과
비고	홈페이지: www.schn.health.nsw.gov.au/hospitals/sch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채드스톤(Chadsto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1341 Dandenong Rd, Chadstone VIC 3148
홈페이지	https://www.chadstone.com.au
비고	멜버른 남동쪽에 위치한 호주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백화점, 리테일매장, 식당, 슈퍼마켓, 극장,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종합 쇼핑몰이다.

○ 엠포리움 멜버른(Emporium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287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s://www.emporiummelbourne.com.au
비고	호주 멜버른의 중심지에 위치한 고급 쇼핑센터로 마이어와 데이비드 존스 백화점 사이에 위치한 6층 규모의 건물에 명품매장, 리테일매장,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웨스트필드 시드니(Westfield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Pitt St Mall and,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westfield.com.au
비고	시드니 CBD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Westfield Sydney는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86/108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davidjones.com
비고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매장 내 다양한 호주 및 국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각종 식료품도 판매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마이어(Myer)

도시명	시드니
주소	436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myer.com.au
비고	시드니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David Jones와 같이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디에프오(DFO)

도시명	시드니
주소	3-5 Underwood Rd, Homebush NSW 2140
홈페이지	https://www.homedfo.com.au/
비고	호주 전역에 총 7개의 매장을 보유한 창고형 대형 아울렛이다. NSW주의 경우, 시드니 도심 기준 거리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홈부쉬(Homebush) 지역에 입점해 있다. 의류, 생활 잡화, 건강, 뷰티 제품 등을 취급하며 영업시간은 10:00~18:00시(월~일)이다.

<자료원 : 백화점별 홈페이지>

- 식품점

○ 울워스(Woolworths)

도시명	멜버른
주소	Cnr Lonsdale Street and, Swanston St, Melbourne VIC 3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호주 전지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콜스(Coles)

도시명	멜버른
주소	Central, 211 La Trobe St, Melbourne VIC 3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울워스(Woolworths)

도시명	시드니
주소	Park St and,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호주 전지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콜스(Col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650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Aldi(알디)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Bay St, Broadway NSW 2007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독일계 마트로 호주 유력 식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울워스나 콜즈에 비해서는 제품의 종류나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이다. 매장에 따라 오후 8~9시까지 운영한다.

<자료원 : 식품점별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Albert Park Driving Range

도시명	멜버른
주소	Aughtie Drive, Albert Park VIC 3206
홈페이지	https://albertparkdrivingrange.com.au

소개	골프장
----	-----

○ 멜버른 스포츠 아쿠아틱 센터(Melbourne Sports & Aquatic Centre)

도시명	멜버른
주소	30 Aughtie Dr, Albert Park VIC 3206
홈페이지	https://melbournesportscentres.com.au/msac
소개	스포츠 센터

○ 피트니스 퍼스트(Fitness First)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Shelley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fitnessfirst.com.au
소개	헬스장 체인

○ 버진 액티브(Virgin Active)

도시명	시드니
주소	2/197 Pitt Street Mall,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virginactive.com.au
소개	헬스장 체인

○ 무어파크 골프(Moore Park Golf)

도시명	시드니
주소	Cnr Anzac Pde and Cleveland St Moore Park Sydney NSW 2021
홈페이지	http://www.mooreparkgolf.com.au
소개	골프장

○ 군야마 파크 아쿠아 센터(Gunyama Park Aquatic and Recreation Centre)

도시명	시드니
주소	17 Zetland Ave, Zetland NSW 2017
홈페이지	https://gunyamapark.com.au/
소개	수상, 복합 스포츠 센터

○ 디 엔터테인먼트 쿼터(The Entertainment Quarter)

도시명	시드니
주소	220/122 Lang Rd, Moore Park NSW 2021
홈페이지	https://www.entertainmentquarter.com.au/
소개	복합 엔터테인먼트 센터

<자료원 : 편의시설별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22-01-01	New Year's Day
신년 대체휴일	2022-01-03	Additional Day
건국 기념일	2022-01-26	Australia Day
노동절(VIC주)	2022-03-14	Labour Day(Victoria)
성 금요일	2022-04-15	Good Friday
부활절	2022-04-18	Easter Monday
국군의 날	2022-04-25	Anzac Day
여왕 탄생일	2022-06-13	Queen's Birthday
노동절(NSW주)	2022-10-03	Labour Day(NSW)
멜버른컵(VIC주)	2022-11-01	Melbourne Cup(Victoria)
성탄절	2022-12-25	Christmas Day
박싱데이	2022-12-26	Boxing Day
성탄절 대체휴일	2022-12-27	Additional Day

<자료원 : Destination NSW, Business Victoria>

10. KOTRA 무역관 안내

○ 시드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영문명칭: Korea Trade Centre, KOTRA Sydney
- 주소: Suite 19.01, Level 19, 57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 전화번호: +61-2-8233-4000
- 이메일: info@kotra.org.au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sydney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일반택시 - George Street 570번지(George Street과 Bathurst Street의 교차로)에서 하차하면 된다. 약 30 여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55.00 호주달러(약 4만 6,500원) 내외이다.
- 방법 2: 공유택시 - 공항 내 공유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에서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차량을 요청한다. 공유택시는 일반택시 이용 시보다 요금이 저렴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 및 이동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하차 지점을 설정한 후 이동하므로 이용이 편리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이동 시간대에 따라 약 3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50.00 호주달러(약 4만 3,300원) 내외이다.
- 방법 3: 대중교통(기차) - 시드니 Kingsford 공항역(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시티(City) 방향 기차를 이용해 타운홀(Town Hall) 역에서 하차한다. George Street 방향 2번 출구로 나온 뒤 QVB를 등지고 도보로 조금 걸어가면 George Street와 Bathurst Street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다. (*KFC 대각선 방향) 해당 건물 19층에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차 편도요금, 피크타임 기준: Opal 카드 소지 시 18.79호주달러, 일반편도 경우 약 19.80호주달러)

○ 멜버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영문명칭: Korea Trade Centre, KOTRA Melbourne
- 주소: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 전화번호: +61-3-9860-0500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melbourne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택시 - 멜버른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약 55.00호주달러로 예상된다.
- 방법 2: 대중교통(Skybus 및 Tram) - 멜버른 공항에서 스카이버스를 타고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에서 내린 후,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 Collin Street 앞에서 Swanston Street 행 트램을 타서 Swanston Street에서 하차한다. 1번과 58번 트램(Tram)을 제외한 St. Kilda 행 트램으로 갈아탄 후 트램 24번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멜버른 무역관은 트램 24번 정류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스카이버스 편도요금: 19.75호주달러, 트램은 마이키카드(Myki)카드를 6호주달러에 구매한 후 충전(A\$ 4.50 / 2시간, A\$ 9.00/ 1일)하여 사용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